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인권과 정책방향

일 시 : 1998년 8월 28일(金) 오후 2시~6시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회인권포럼은 여야 의원 25명으로 구성된 국회등록 의원 연구단체입니다.
국회인권포럼은 국민기본권 신장과, 인권침해 사례의 조사 및 제도개선 사업,
국내외 인권관련단체와 연대·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104호 황우여 의원실
☎ (02)788-2017, FAX : (02)788-3104, E-mail : cmkwon@chollian.net

주 최 : 국회인권포럼 (☎ 788-2017)
주 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인권 자료실		
총록일	본투기	제작자

A2

69

국회인권포럼 제3회 정책 심포지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인권과 정책방향

일 시 : 1998년 8월 28일(金) 오후 2시~6시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국회인권포럼 (☎ 788-2017)
주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인사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이 가을의 알찬 결실로 돌아오듯이 지금 당하는 여러 어려움이 내일의 더 큰 성취로 결과 맺어질 것입니다. 국회인권포럼은 상반기에 “해외입양인의 인권과 정책방향”(제1회), “실직노숙자(Homeless)의 인권과 정책방향”(제2회)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많은 분들로부터 애정어린 성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정책마련 심포지움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의 인권과 정책방향”이 그 주제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양지마을’과 같이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온 문제이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장등 일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의 관리감독과 제도적 맹점에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탓에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그에 대한 대책을 토론하는 일은 시의적절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불우한 이웃의 인권을 함께 생각할 때 우리 모두의 인권이 향상되고 국가의 수준이 고양됨을 잘 압니다. 이 심포지움을 계기로 더 이상 수용자들의 자유권을 담보로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자유와 함께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인권포럼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분명히 있어 왔지만 제대로 문제제기되지 못한 인권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 실체를 규명하고 정책대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정책심포지움은 항상 문제의 출발입니다. 오늘 토론된 내용이 곧되어 열릴 정기국회나 국정감사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되어서 구체적으로 정책변화가 도출되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또 인권과 복지에 관련된 교수등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다면 성심성의껏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사회의 인권증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거듭 감사드립니다.

1998년 8월 28일

국회인권포럼 대표
국회의원 황우여

심포지움 순서

13:30 - 14:00	등록
14:00 - 14:20	인사 (토론참석자 및 내빈 소개)
	개회사 황우여 의원 (국회인권포럼 대표)
	축사 내빈 중
14:20 - 15:50	주제발표
	사회 : 이정호 (국립사회복지연수원 교수)
	주제 1 : 사회복지수용시설 수용자의 인권실태 백종만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북대 교수)
	주제 2 : 인권침해의 원인과 문제점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 3 :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대책 이찬진 (민변 변호사)
15:50 - 16:10	휴식
16:10 - 17:30	지정토론
	김정렬 (장애우권익연구소 소장)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임인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 조홍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재명 (사랑밭재활원 원장) 이덕우 (변호사) 김영화 (양지마을 출소자)
17:30 - 18:00	종합토론
18:00	폐회

국회인권포럼은 여야 의원 25명으로 구성된 국회등록 의원 연구단체입니다.

국회인권포럼은 국민기본권 신장과, 인권침해 사례의 조사 및 제도개선 사업, 국내외 인권관련단체와 연대·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104호 황우여 의원실
☎ 02)788-2017, FAX 02)788-3104, E-mail : cmkwon@chollian.net

사회복지수용시설 수용인의 인권 실태와 대책

백 종 만 (참여연대 사회복지특위 위원장, 전북대 교수)
윤 찬 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찬 진 (민변 변호사)

I.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의 관점

1. 시설 수용인의 인권문제를 접근하는 관점에 대한 고찰

1) 인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망라하는 보편성을 특징

자유권적 기본권과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토대로 하는 근대국가체제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을 전제로 한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국가체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권개념은 “자유권”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권”을 포괄하는 관점으로 변화하여 왔다. 더욱이 이와 같은 인권 개념의 확장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각국의 사회적, 역사적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을 선언한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자유권이외에도 사회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국제 규약으로 이는 1966년 “국제인권협약으로 발전하여 1976년부터 국제사회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B규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A규약)을 개별국가에서 받아들여 조약화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역시 이를 체결하여 동 규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자유권은 물론이고 생존권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권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인권 개념이 보편적인 가치로서 자리잡고 있다.

2)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역사성에서 본 인권 문제

① 사회복지 수용시설은 역사적으로 봉건체제에서 근대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대규모 부랑하는 노동 가능한 빈민(able-bodied poor)을 통제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노역소(workhouse)와 노동 불가능한 빈민을 수용하여 최소한의 처우를 제공해주는 구빈원(almshouse)이 그 효시가 된다. 결국 이러한 시설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던 영국의 입현군주국가체제에서 이른바 '定住法(Settlement Act)'을 위반한 부랑인들을 일정한 지역이나 장소에 구금하여 노동을 강제하는 대신에 최소한의 생존을 제공하여 주는 시설이었다. 이러한 제도는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산업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생산인력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강제화된 무력에 의해 노동계급을 창출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이며, 오늘 날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반인권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질환자 또는 장애인 등을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안전을 위해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시설에서 출발하여 그 중 치료기능이 발전한 형태가 오늘날의 병·의원제도이고, 치료기능보다 격리 내지는 수용보호 측면으로 발전한 형태가 오늘날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분류되는 장애인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등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그러나,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확산되면서 자본주의체제에서의 사회적 탈락자나 취약층에 대한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으로 수용시설에 대한 관점도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그들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보장은 기본적 전제가 되는 것이다. "수용"이라는 행위 자체가 보호대상자의 일정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 수용시설에의 입·퇴소 결정을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며(프랑스, 독일의 경우 사회법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퇴소의 자유 내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시설수용인의 인권문제를 접근하는 몇가지 기본적 논의들

① 현재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체제에서 조차 시설수용제도가 가지고 있는 "자유권의 일정한 제한을 통한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 수용제도는 본질적으로 시설수용인의 관점에서 볼 때, 수용이 당사자 개인의 승낙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체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기본적인 자유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인권 침해의 문제는 종류별로 크고 작은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입소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에 의한 입소라고 하여도 퇴소가 자유롭지 않는 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다.

②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수용시설제도는 '자유권 없는 생존(survival without freedom)' 이

라는 전근대적인 빙민법시대의 논리가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복지"라는 외피를 둘러쓰고 영리를 추구하려는 의도, 정부 및 사회적 다수의 입장에서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특정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격리하려는 경향 등이 중첩적으로 맞물려 사회적 약자인 수용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제도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반성적으로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③ 정신질환자, 장애인, 부랑인 등을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질서의 유지, 타인의 자유 침해 방지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권 보장 문제간의 형평성 문제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 반성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나 부랑인들이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을 가지고 있어 이들로부터 사회를 지키고자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이 곧 사회방위의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자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구조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을 단순히 격리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재활의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배려의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다.

2.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의 정립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1) 자유권과 생존권의 동시 보장

사회복지시설은 자유권을 억압하는 대신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닌 자유권과 생존권을 동시에 확보해 주는 제도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혁명을 통해 자유권을 쟁취한 시민계급에 의해 근대 사회가 시작되었고,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결함을 보완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생존권의 이념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생존권의 보장이라 함은 이미 그 말 뜻에 자유권의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자유권이 전제된 상태에서 생존권을 보장한다든가 또는 생존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자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권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권은 경제적인 의미의 생존 이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극단적이고 역설적이지만, 구걸하거나 굶어죽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이들의 생존권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포기할 수 있어야 자신의 생존에 대한 권리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 특히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어찌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곧 죽음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곧 인간다운 생존권마저 부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인간다운 생존권의 보장

사회복지 수용시설은 생존권 없는 자유권은 보장될 수 없다는 근대 인권사상을 구체적으로 보장해내고 담지해낼 수 있는 체제로 개혁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중 일부는 반드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의 속성상 시장사회로부터 상품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은 공적인 기구에 의해 최소한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족이 해체되거나 붕괴된 사람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도 그들이 인간다운 생존을 원하는 한 이를 보장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책임인 것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시장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국가 등 공적인 기관에서 즉, 시장 외부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 또는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존권은 그 어떤 사람의 재산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생존권의 이념인 것이다. 생존권의 실현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존을 넘어 인간적으로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재활서비스, 임상적 치료 등과 같은 전문적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시설에 단순히 가두어 놓는 것이 생존권 보장이 아닌 것이다.

3) 권리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

시설의 인권문제는 시설 운영자와 수용인 간의 사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 및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용시설 운영자와 수용인 간의 구조적이고도 제도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굳이 사회복지의 이념과 원리를 내세우지 않는다 하여도 인신을 억압하여 장소의 이동을 불가능케 하는 수용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되는 법적인 문제를 갖는다. 따라서 공신력을 갖는 국가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도 그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민간에 그 책임을 이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설수용인들의 생존권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II. 사회복지 시설수용인의 인권 실태

1. 최근 10년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

아래 표에 소개된 사례는 장애우 권리문제 연구소가 발간하는 월간지 “함께 걸음”(1988년 창간)에 보도된 내용 및 “시설문제연구회” 내부자료 및 장애우 권리문제 연구소 주최 제3회 정책토론회 자료집(성폭력과 장애인의 인권) 및 중앙일간지, 기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들

시설명 (종류)	공론화 시 점	문제가 제기 되었던 인권침해 내용	관련 비리	비 고
부산J원 (육아)	1986 1992	- 성폭력(외부인, 원장아들, 원생이 초등3/ 중2,3 폭력) - 원생폭행	운영전반 비리	자원봉사자가 제보
부산 H원 (부랑인)	1987	- 강제노역 - 강제구금 - 폭행 - 폭행치사 의혹 (공금횡령만 인정됨)	재정비리	
전북H학교 B원 (장애인)	1987	- 성폭력(원생다수, 보육사) - 아동학대, 살인, 암매장 (공금횡령만 인정됨)	재정비리	H학교교사 졸업생, B직원 제보
충남Y원 (육아)	1988	- 성폭력(생활지도사가 유치원생, 초등생, 중 1,2 성폭행) (징역2년, 시설장 직위해제)	재정비리	자원봉사자 제보
전북M원 (육아)	1988	- 성폭력(이사장이 12명 성폭행) (구속/최종결과는 미확인)		학교교사 제보
경기S원 (육아)	1990	- 성폭행(원장이 여성1 폭행) (맞고소, 증거불충분 고소취하)	시설 재산권 다툼	전이사장의 고발
경기J원 (장애인)	1990	- 구타와 감금 - 사망원생 사후처리 의혹 - 99명 장기기증각서 사건	입소기부금 관련비리의혹	장애인복지 뉴스 기사로 정치문제화
서울S원 (정신지체)	1990	- 한진원군 사망 등 80년대 29명 사망 의혹(본드작업 및 지립자작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의혹 제기) - 정신지체 아닌 아동 수용 - 아동상담소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소 의혹		월간 '함께걸음' 기사 수집

시설명 (종류)	공론화 시 점	문제가 제기 되었던 인권침해 내용	관련 문 제 점	비 고
경남 M원 M특수학교 (장애인)	1990	- 원생구타, 강제노역, 임금착취 - 무자격 교장시비 - 족벌체제 운영 시비 - 성폭행 시비		특수학교교사 출근거부로 문제화 됨
서울S 재활원 (미인가)	1990	- 후원금 착복시비		월 간 '함께걸음' 기사수집
서울E원 (육아시설)	1991	- 시설내 생활 연장아에 의한 성폭행		시설이 경찰에 고발
충북S원 (육아시설)	1991	- 성폭력 - 강제노역 - 국고보조금 횡령 (구속, 징역 6월)		제보자 자원봉사자
충북S원 (정신지체)	1991	- 김성경씨 의문사 - 정상인 강제 수용 의혹 - 보조금횡령 - 강제노역(임금미지급) - 원생을 무보수 가정부로 착취		
전북B원 (맹아학교)	1992	- 정신지체아를 시각장애아로 허위 기재 국가예산 보조 - 학교예산을 B원 재정으로 유용 - 학교장의 예산횡령 의혹	족벌운영	제보자 학교교사
경남H원 (정신지체)	1992	- 강제노역 - 구타		
경북Y원 (육아)	1993	- 원장이 14세 성폭행 (피해자 고소취하)		제보자 피해자
충남K원 (육아)	1994	- 원장이 중3 성폭행 (징역2년/시설장 직위해제)		제보자 보육사
충남T 기도원 (미인가)	1994	- 불교 창변 - 구타 (미확인)	사회복지시설 로운영(후원금 품 모집, 착복)	
경기 (윤락여성 선도시설)	1995	- 방화로 인한 사망사고 - 편지검열, 구타 - 입소의 법적조치 미흡 지적		
S 마을 (미인가)	1995	- 성폭행 - 구타 - 후원금횡령	국립공원 체손 무자격 종사자	

시설명 (종류)	공론화 시 점	문제가 제기되었던 인권침해 내용	관련 문 제 점	비 고
경기E원 (장애인 농아학교)	1996	- 강제노역(임금착취), 폭행 - 후원금품, 원생보호비 횡령 등 - 유령직원 인건비 횡령 - 구타 사망 의혹	운영비리 족벌운영	원생농성으로 인지됨
울산H원 (장애인)	1996	- 강제노역 - 국고보조금, 기부금 횡령 - 입소기부금 부당징수 - 성폭행 (미확인)	족벌운영	
장항S원 (정신요양)	1997	- 강제노역 - 국고보조금, 기부금 횡령 - 사망환자 암매장 (미확인)		제보자 탈출 원생
충남Y원 (부랑인)	1998	- 강제노역 - 강제구금 - 상습폭행, 상해, 협박 (구속수사중)		제보자 탈출 원생

2. 사례를 통해 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구제

1) 쟁점이 된 인권침해의 유형

① 자유권적 기본권(특히 신체의 자유)침해가 주된 쟁점

- 주된 유형은 성폭력, 폭행, 강제 구금, 강제 노동, 살인 및 암매장 등

② 생존권 침해 문제의 사회적 쟁점화 미흡

- 주된 유형은 국가의 보호비용이나 민간 후원금 횡령 등

- 사회로부터 잊혀진 존재로서 그들의 생존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합법적이며 정당하게 귀속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이나 민간 후원금이 유용되어도 크게 문제 시 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첫째〉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폐현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시설에서의 횡령사건은 커다

란 파장을 일으키지 못한다. 단지 불쌍한 사람들의 뜻을 가로챘다거나 복지를 내세우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시설장에 대해서 도의적이며 또한 일시적인 비난만이 존재한다.

〈둘째〉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의 수준이 생존권을 권리로 인식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신구속 등 신체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식이 군부독재 시대로부터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 지배해 왔기 때문에 생존권에 대한 권리의식은 헌법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념적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세째〉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국가권력이 개인에 대해 통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면 보장되기 때문에, 사인들 간에 있어서도 타인에 대해 방해하거나 개입하지 않으면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존권의 경우는 국가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부자위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작위의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없고 의식적으로도 권리라는 생각보다는 자비로운 배려로 인식되고 있어 침해라는 판단이 유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민간에서 사인들 간에 발생한 생존권의 침해도 권리의 침해라는 것보다는 단순히 업무상으로 횡령한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다.

③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 인권 침해의 문제를 인권의 양대 축인 사회권의 침해와 자유권의 침해라는 점의 양 측면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인권 침해의 구체적 내용

① 자유권의 침해

- 신체를 훼손 당하지 않을 권리의 침해 : 동의 없는 불임시술, 강제 삭발 등
- 신체의 자유침해 : 불법적인 구금, 폭행, 성폭행, 강제노역 등
- 통신의 자유의 침해 : 외부와의 편지, 전화 제한
- 종교의 자유의 침해 : 종교 집회 참여에의 사실상 강제 동원

②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생존권의 침해

- 보호비의 횡령은 시설 운영자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라고 볼 수 있음
- 음식물 제공 제한, 금지 등의 사례
- 시설보호자의 보호 내용과 수준의 열악성: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수용인의 생존권 침해인데 이러한 쟁점은 부각되지 않고 있음

-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3)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대응 경향

- ① 성폭력과 폭행의 경우에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사법적 구제 실현
- ② 강제구금과 강제노동의 경우에 사법적 구제가 실현되지 않음(부산 H원 사건 이후 사법부의 판결 경향)

3. 기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지 않는 수용시설의 몇가지 인권 문제들

1) 무호적자 문제

호적없이 법의 보호망 밖에 방치돼 살아가는 무호적자가 전국적으로 1만 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동아일보: 97. 8. 2).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아원·양로원·장애인시설·정신요양시설 등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7백 43곳을 대상으로 무호적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수용인원 7만 3천 4백67명 중 19.5%인 1만 4천 2백 98명이 무호적자로 드러났다. 정부가 무호적자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기존에 당국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국한한 것으로 비무허가 시설에 수용돼 있거나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합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¹⁾ 무호적자는 대부분 어려서 버려지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신의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 이들은 법적으로 실체가 없어 학교교육은 물론 취업이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고 은행거래나 선거권 등 모든 사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특히 각종 사고나 범죄로 인해 사망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소위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이 호적을 얻는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통 5~6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호적이 없는 사람은 행정적으로도 생활보호 등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자유권이나 참정권, 기타 사회생활과 관련된 권리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존권의 실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2) 시설종사자들의 인권문제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대상자들의 인권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들을 현장에서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또한 심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시설 종사자

1) 지난 '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98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제로 전환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승인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었다.

들은 수용인들과 더불어 수용되어 있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저임금 수준에 처해 있다. 이들에게는 노조도 불법시 되고 있으며, 보수교육 등 전문성 강화의 기회는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회복지사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친인척이나 지인들로 채워진다. 문제가 되었던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들은 사회복지사업을 주로 희생과 봉사의 관점에서만 보며, 재활이나 임상적 치료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편이다. 그러므로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채용을 기피하며, 종사자들에게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수용된 입소자들 중에서 시설장의 심복을 만들어 직원으로 채용하여 수용인들을 통제하는 방식도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시설종사자들이 재활과 치료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로 채워지지 않는 현실은 곧 우리의 사회복지 시설이 대부분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인권침해의 원인

1) 시설 운영자 개인의 비도덕성·비전문성

수용시설의 비리사건이 터지게 되면 우선 시설장이나 법인의 대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언론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때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도덕성과 전문성에서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명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인식하는 수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사회복지를 단순히 자선적이거나 희생, 봉사 등의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제아무리 잘 실천된다 하더라도 수용인들의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종사자들의 노동력 착취를 강요하게 되는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일수록 수용인들의 문제해결과 능력배양, 사회적 기능향상, 궁극적으로는 사회복귀 등에 대해서 점차 관심이 멀어지고 시설장 개인의 인간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체제로 이끌어 가게 된다. 즉, 시설장의 개인적인 우상화, 이로 인해 더욱 강화되는 수용인들의 의존성, 반대하는 자에 대한 가혹한 탄압 등이 결국 시설 비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해 사유물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 대규모 시설들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의해 설치·운영되는데, 이러한 법인은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법인 재산은 개인적 소유의 대상물이 아니라 사회의 재산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재산과 시설을 자신이 출연했다는 이유로 개인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마치 개인의 왕국과 같은 전횡을 휘두르는 것이다. 법을 무시한 각종 불법적 폭력, 정부보조금이나 후원금의 유용 등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다. 법인을 사회에 기증한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게 주어지는 세제상의 혜택을 이

용하여 재산을 은둔시키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각종 부정과 비리를 범하게 되며 수용인들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의 권위를 강요하게 되어 결국 인권침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보조금과 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입소자 수를 무리하게 늘리고 때로는 허위로 입소자 수를 조작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복지를 팔아 부와 권력을 확보하려는 기만적 복지자본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행정감독기관의 감독 부실

사회복지사업상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등은 법인과 시설의 자산운용, 업무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구 법 제37조). 물론 수용인의 인권에 대한 감독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도·감독의 대상인 시설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감독기관이 제대로 행정지도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다.

심지어 공무원과 시설장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시설에는 정부보조금, 민간 후원금이 들어 온다는 사실 때문에 경찰, 동네 불량배들이 시설에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위낙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파악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3) 국가책임의 미흡 : 인권보장의 법적 제도의 미비

사회복지에 관하여 국가는 헌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헌법 제34조 제2항).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권 즉, 자유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이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여 시설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① 자유권과 관련하여

시설보호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가 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전문적 판단, 그리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승인이다. 이것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퇴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퇴소에 대한 판단, 본인의 퇴소희망 등이 적절하게 다루어지는 법적 장치가 없다. 예컨대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이 있고 생활보호업무지침상으로 입퇴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조차 제대로 지켜지는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로써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또한 시설 내에서 외부와의 통신의 자유, 강제노역에 응하지 않을 자유 등에 대해서도 입법적인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역시 방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강제적으로 시설에 감금되고, 한 번 입소하면 퇴소가 거의 불가능한 것은 시설의 치명적인 문제이다. 군대에도 복무기간이 있고 교도소에도 형기가 적용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수용기간에 대해 법적인 규정장치가 없어 입소자들이 영원히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입퇴소 및 수용기간에 대한 판단과 이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승인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시설 내부에서의 자유권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② 생존권과 관련하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존은 철저하게 시설장에 달려 있는 실정이다. 생활보호법상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의 보호(생활보호법 제5조), 생활보호업무지침에 따른 제반 급부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거액보호대상자들에게는 개인에게 급여가 직접 지급되지만 시설 보호대상자들에게는 시설장을 경유하기 때문에 생존권 실현에 지장을 두고 있다. 따라서 무호적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입소자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법적인 장치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정부의 생활보호급여와 보조금, 민간 후원금의 직접수령권을 인정하는 법제가 필요하다.

현행 형사법체계하에서 “노예제” 운용에 대한 적절한 처벌법규가 없다는 점 때문에 부득이하게 택하여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당시 수용시설은 ‘자활사업’에 응하지 않는 수용인들에 대하여 이를 강제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노역”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원의 형사확정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어 집행될 때에나 가능한 것이다. 또한 시설에서 수용인들의 노역에 대하여 극히 상징적인 금전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지급을 하지 않은 식점에서 이미 수용인들에 대하여 강취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시설장 및 관련자들의 감금상태하에서의 수용기간 동안의 강제노역행위와 이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강취한 것은 특수강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이를 “특수감금”과 “횡령”이라는 죄명으로 기소한 것이었다. 그러니 ‘강제노역’, ‘폭행’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②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988. 11. 8자 88도 1580호 판결을 통하여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수용인들을 주간에 도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야간에도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시정한 것은 당시의 심신장애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법률에 의한 부랑인의 선도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마련된 1975. 12. 15자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무부의 1981. 4. 17자 ‘구걸행위자실태조사지침’, 치안본부에서 1984.5월에 성안한 ‘부랑인보호대책’과 부산직활시의 ‘재생원조례’ 등에 근거하여 수용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이탈을 방지하며 충분한 교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수용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용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행위를 하거나 출입문을 시정한 행위 등은 “정당한 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이었다.

2) 이와 같은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한 검찰의 법령적용상의 미흡한 대처와 함께 대법원에서의 특수감금죄의 무죄선고에 따라 30여년만에 사회여론화되었던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는 사법적인 면죄부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그 후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0여차례의 시설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경우에도 본질적인 문제인 수용인들에 대한 “감금”이나 “강제노역” 등의 문제는 더 이상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오로지 개별적인 시설장의 ‘횡령’ 등 금전적인 개인비리사건으로 묻히게 된 것이다. 최근에 수십명의 집단탈출을 통하여 수년간의 독방감금, 폭행치사상, 강제노역 등의 인권침해실태가 밝혀져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의하여 고발되고, 피해당사자에 의하여 고소까지 이루어진 이른바 ‘양지원 및 송현원’ 사건의 경우 시설장인 ‘노00’의 구속영장상에는 ‘폭행’ 등 혐의만 적용되고, 감금죄 부분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 역시 자칫 과거와 같은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록 수용시설에 대한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나 이와 같은 종합적인 면들을 고려하면 이사건에 대하여 향후 수용시설의 인권침해방지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와 함께 사법정책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용시설운용상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특수강도죄’에 의한 사법적인 심판이 필요하다고 보

III.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현행 수용시설 관련 법령의 문제점

1. 형제복지원 사건과 그 이후의 사법적 대응양식 및 ‘양지원 사건’에 대한 적용법령

1) 수용시설의 인권침해문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최초의 사건은 87년에 발생한 이른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현대판 노예제’라고하여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내렸던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진 사건이었다.

① 당시 ‘부랑인선도시설’로서 수백명의 수용인들이 집단적으로 탈주하여 사회문제화된 이사건에서 검찰은 퇴소희망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감금과 집단적인 폭행, 강제노역 및 정부보조금의 조직적인 횡령 등을 문제삼아 당시 시설장이던 공소외 박00을 포함한 형제복지원 임직원들을 특수감금, 특수폭행,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내용은

며, 피해자인 수용인들의 장기간의 의사에 반하는 감금·부랑인의 경우 현행법상 그 어디에도 퇴소를 원하는 자를 계속 감금토록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에 대하여는 사법부 역시 형제복지원 사건의 예와는 달리 전향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현행 사회복지수용시설의 강제보호조치의 법률상의 문제점

1) 현황

1994년 말 기준으로 인가받은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총수는 759개이고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76,723명이다. 사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을 제외한 수용시설은 크게 8개 분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중 제도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분야에 대하여만 살펴 보기로 한다.

아동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2조,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영,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직업보도시설, 교호시설, 자립지원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요보호아동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시·도지사에 의하여 입·퇴소와 관련한 강제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직업보도시설, 교호시설의 4가지 종류이다.

부랑인선도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전국적으로 총 42개소가 있으나 수용인원은 13,370명으로 전체 수용인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동 시설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부랑인시설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랑아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3조 제5호,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전국적으로 총 75개의 시설이 있으나 수용인원은 17,944명으로 수용인의 23.4%를 차지하고 있다. 부랑인선도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이 암말로 수용인의 의사에 반한 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인권침해가 가장 첨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제복지원사건, 양지마을 사건이 모두 같은 종류의 시설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부녀선도보호시설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여기서의 요보호자는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대로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는 별개로 법 제9조에서 시·도지사에 의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선도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의 강제구금을 수반하는 것으로 95. 8. 21.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시설들이다.(그러나, 동 사건에서 시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감금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은 바 없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총 160개소에 13,936명에 수용인의 18.2%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도지사, 시장·구청장·군수가 장애인에 대하여 시설입소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자유의사에 반

하는 시설입소조치 및 퇴소요구의 거부는 사실상의 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2) 행정처분에 의한 수용처분의 위헌, 위법성

①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검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른바 행복추구권은 자유권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로서 해석되고 있다. 행복추구권의 본질은 바로 “자유행동권”에 있다는 것이 일관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입장이며, 이러한 자유행동권의 출발점이 바로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체포, 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어떤 강제처분도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한 위헌임이 명백하다(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법관의 선고없이 행하여지는 구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필요적 보호감호처분’은 적법절차원리에 위배한 위헌조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89. 7. 14. 선고 88헌가5, 8호 89헌가44호 사건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은 “체포, 구속,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的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하고, 또 실체적으로도 ‘정당한 법’이 아닌 한 위헌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② 행정처분으로서의 보호조치의 위헌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용시설에의 입소경위는 크게 자발적인 입소와 강제처분으로서의 보호조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아래에서 살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후자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모든 국민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의 각종 사회복지제도상의 보호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경우 시설에서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보호대상자가 법령상에 그에게 보장된 보호를 거부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보호를 강제할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 보호대상자들이 ‘사회복지수용시설’에 입소하여 소정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여부는 전적인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서, 만일 이와 같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조치에 의하여 시설이라는 ‘일정한 지역에 수용’되고, 즉각적인 장소적인 이탈이 제한된다면 이는 곧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구속’

에 해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위에서 본 바와같은 5가지 유형의 수용시설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일방적인 보호조치들은 그것이 보호대상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보호 대상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강제구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호대상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입소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한 각 개별법률의 근거 조항은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더욱이 현행 법률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부랑인보호시설입소조치는 ‘부랑인’ 개념의 법적 모호성은 말할 것도 없이, 아예 근거법률조차 없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보호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한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리 및 신체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히 위헌·위법인 처분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정부의 행정입법들은 결국 “수용시설보호”의 관점을 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급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사회적 다수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구성원으로 낙인찍힌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방위”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격리”시키는 관점을 강조한 것으로서 ‘빈민법’적인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강제노역, 자유퇴소 등의 제한조치의 위헌성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강제노역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처분은 형사처분으로서의 “징역” 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부랑인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에서는 행정지침 등을 근거로하여 ‘자활사업’이라는 명문으로 시설수용인들에게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며 이는 형법상의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맥락으로 시설수용인들은 자유의사에 의한 입소가 보장될 뿐 아니라 자유퇴소가 보장된다. 그럼에도 수용시설 관련 훈령과 지침에서 퇴소심사에 관한 조항들을 두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더욱이 양지마을 사건에서 밝혀졌듯이 일부 악덕 시설장의 경우는 시설수용인들의 외부로의 서신교환을 차단하고, 외부와의 전화 통화 등 통신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범법행위들을 자행하였으며, 시설 내의 다양한 폭력, 성폭행, 독방에의 감금 등 일련의 인권침해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설에서의 제반 문제점들은 바로 자유로운 퇴소를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발생한 부산물들이라고 하겠다.

IV. 개선방향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문제가 된 사회복지시설들은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노예들의 집단수용소”라고 해야 적절할 것이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기타 모든 자유권

이 제한되며, 강제노역에 투입되면서 경제적인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오로지 생물학적인 노동력으로만 간주되던 노예의 신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시설 수용인을 정당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해 사회적인 노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1. 국가책임의 강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를 위해 국가의 법적, 재정적 책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수용시설은 신체구금의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국가기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시설복지 중심에서 재가복지 및 지역사회보호 위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민간 수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국가 직영 및 공영 시설을 운영할 것을 권고 한다. 입소와 퇴소 절차, 시설보호수준 등에 대해서 국가 책임하에 법규범으로 정하여 신체의 자유 및 제반 자유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과 아울러 인간다운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재가복지사업이나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 전문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거나 부양해 줄 가족이 없는 대상자들, 각종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가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곧 시설복지인 것이다.

2. 입·퇴소의 자유 보장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무엇보다도 수용시설에 관한 제도는 자유입소와 자유퇴소가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사회복지시설 중 단순 이용시설이 아닌 ‘수용시설’의 경우는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시설의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보호대상자의 구금 등 신체의 자유나 기타 자유의사를 저해하는 내용의 각종 행정법률, 지침 및 운용규정 등 관계법령을 전면 폐기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형태의 ‘주거 및 관련분야 급부 및 서비스를 일정 기간동안 제공하는 시설’로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시설수용인들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로서 그들의 인권침해를 대변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에 그동안의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하겠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와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 이와 같은 ‘반인권적인 제도’를 정부 스스로 폐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3. 시설의 전문화 및 소규모화

시설은 인간 축사가 아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도 명백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을 사람답게 생존케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문적인 서비스가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인간의 사회적 기능은 권력이나 신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주관적 요소와 그를 둘러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통해 조정되고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시설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이러한 전문적 실천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실제로 문제가 된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사회복지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고 직원도 실질적인 사회복지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탈출 시도가 이루어지고 이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물리적 폭력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악순환의 상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화와 관련하여 수용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의 규모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설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시설이 곧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의 그룹 홈이 필요한 것이다.

4. 시설 운영의 민주화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

비리 시설의 공통된 특징은 시설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봉건성과 폐쇄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과 친지로 구성된 이사회, 직원 등 소위 족벌체제를 구성하여 전횡을 휘두르는 것이다. 이는 시설의 사유화문제에 직결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이사회의 구성에서 친족의 개입을 금지해야 하며, 시설 운영상에 결산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예마다 농아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 '97년에 추진되었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시설의 민주화와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제시되었던 방안들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이 수용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익노조의 건설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수용인의 권리와 시설 종사자의 권리은 상당 부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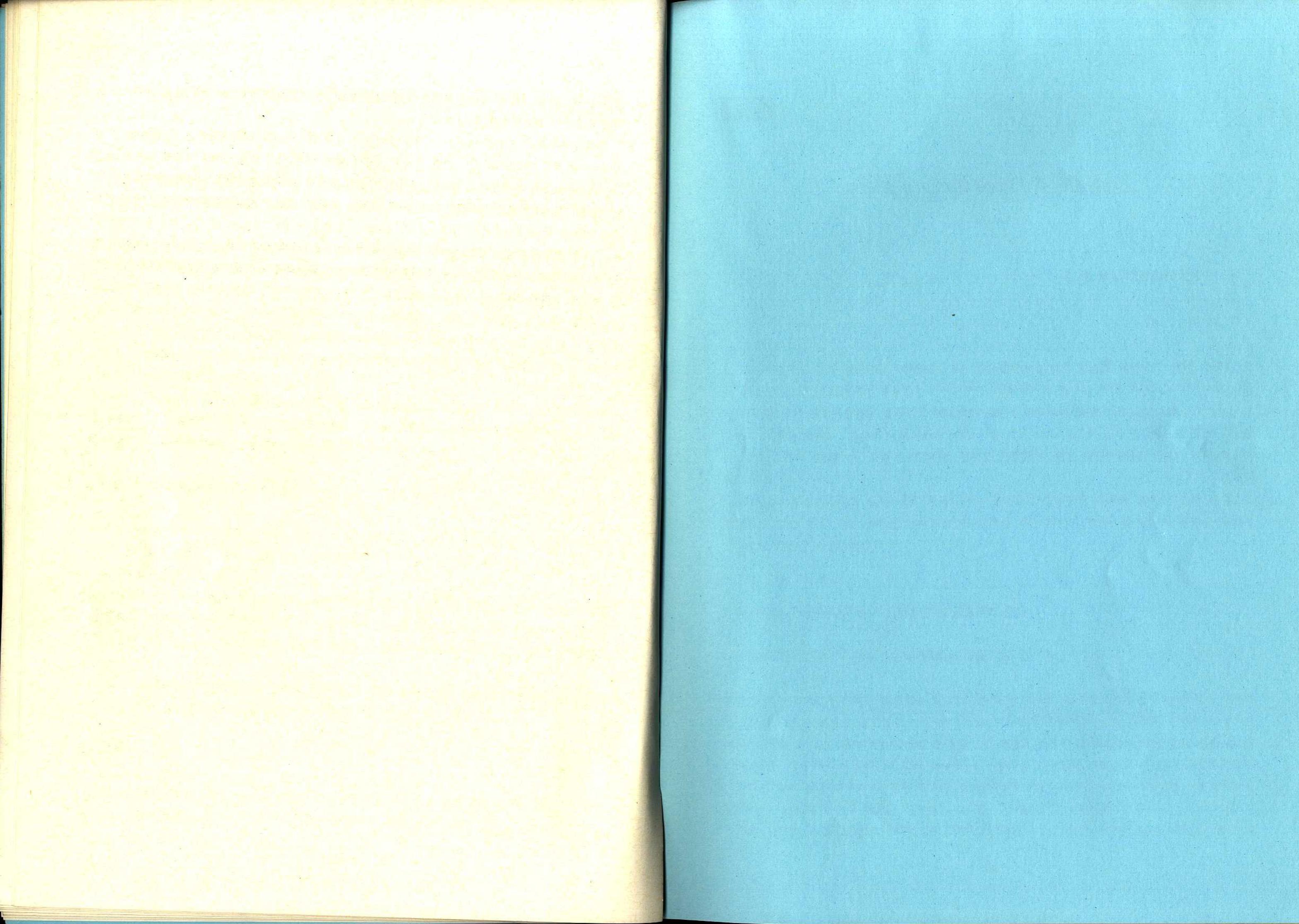
V. 결론

결국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비리는 시설을 사유화하려는 시설장과 무책임한 국가가 만들어낸 합작 품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설 수용인들은 노예적인 신분과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곳에는 인권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다운 생존권은 물론이려니와 가장 원초적인 신체의 자유마저 침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진정 인간적인 사회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인권국가,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시설 수용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순간적인 미봉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도 목적적인 계획 아래 전문적, 과학적, 인권적 시설복지를 확립하는 지혜와 도덕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복지는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어느 신문과의 대담에서 밝힌 바 있다. 우리 시민사회 전체는 복지권이 인권으로서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국가에 촉구하고 감시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장애인 수용시설 관련 토론판제문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보건복지부는 어제 양지마을 위탁권을 다른 종교단체에게 넘겨 주기로 결정하고, 현재 직원은 모두 퇴출시킴으로 새로운 수탁기관에서 다시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십수년간 시설비리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탁권을 박탈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그렇지만 이번의 조치는 다분히 국회의원과 언론의 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포럼은 시설비리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주제발제에서 지적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수용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수용시설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제안으로 토론을 대신하겠다.

1. 우리나라 장애인수용시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1-1 왜 장애인들이 시설에 수용되기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가.

시설에 수용되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약 4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현재 수용가능 인원은 약 2만4천여명 정도이다. 이러한 현실을 이용해서 수용시설 입소 과정에 탈법이 조장되고 있다. 시설의 입소는 입소대상 장애인 중 생활보호 대상자를 우선 입소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장애인은 시설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실비를 자부담하고 입소할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지체장애인 수용시설인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형편이 안되는 경우에는 아이를 시설앞에 유기(遺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친권포기각서’를 쓰게된다. 이런경우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기부금과

월 15만원에서 3-40십만원의 생활비를 시설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1-2 앞으로 사회에 통합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용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시설경영자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와 더불어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장애인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상품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원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시설운영자에게 있는한 전문요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친인척을 무원칙하게 고용함으로서 전문적인 사회복귀프로그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1-3 시설운영자들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나라 시설장은 대부분 설립자이거나 그 가족인 경우가 많다. 설립자의 특징은 시설에 대한 애착심은 많으나 그 애정이 원생들에게 있기보다는 시설유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선사업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이해가 서로 달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의 결과가 바람직한 운영보다는 대부분 시설장의 의중이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다.

1-4 장애인 수용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있는 정도는

우리나라 수용시설은 대개 '누구누구의 왕국'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수용시설 비리가 사회에 알려질때마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반응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설안에서 나쁜의미의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와의 단절된 구조때문이다. 시설운영자 자신의 그러하고 직원들조차도 대부분의 시간을 시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원생들에게 있어서 사회와의 단절은 당연한 결과이다. 결국 시설의 공개념(公概念)다는 사개념(私概念)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와의 단절현상이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역사회와의 단절은 시설보호의 궁극적인 목표인 시설생활자의 사회적인 자립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단절은 시설병에 걸릴 위험을 안고 있다. 앞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시설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비상식적인 행동들-성폭행, 자해행위, 폭력 등의 인권문제-이 시설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1-5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시설에 대한 행정부의 감사는 대부분 회계감사에 그치고 있다. 그것도 형식적인 장부감사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있으나 마나한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감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직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행정부의 태도가 구호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시설비리가 터질때마다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시설과 행정관청과의 밀착관계이다. 그리고 뇌물수수가 단골메뉴처럼 불거져 나온다.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는 시설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있는 시설운영 기준이나 지침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1-6 지난 십년간 세상에 알려진 수용시설비리 문제 (월간 '함께걸음')

장애인 관련 전문지 함께걸음에 실린 장애인수용시설비리를 취재한 기사 헤드라인을 소개하는 것으로 사례를 대신하고자 한다.

'묵묵무답에서 발생된 것이 난동으로밖에..... 정동렬의 죽음을 단순한 자살로 묻어 버리기에는...'
'구타, 성폭행, 사망, 복지시설 왜 이러나' '가족들 물려나라 못 물려난다'
'보드작업, 감금방, 사망, 드러난 복마전'
'시설은 병들고 있다. 신아원의 주인은 누구인가.'
'망가뜨린 사람이 보상해야제 시설의 파행적 운행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
'비리책임자 처벌이라는 선례가 필요하다'
'장애인 추행, 그리고 도처에 널려져 있는 인권유린의 덫'
'정점에 도달한 장애우 복지시설 비리 그 끝이 안보인다'
'장애인가 버려져야만 하는 사회' '의혹 확산되는 신망애'
'사회화된 보육시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늪에 빠진 복지시설' '복지시설의 성폭행백서' '복지시설 중병을 앓고 있다'
'한 복지사업가의 일그러진 초상' '인권의 사각지대 신생정신요양원을 가다'
'용돈 줄 테니 반향하지마, 청주 성화원, 성폭행 사건 발생'
'복지 사업의 영리수단' '갈 곳 없는 장애우의 서러운 꼬리표 친권포기각서'
'한국판 수용군도 효정원의 검은 실체'
'집단농성으로 불거져 나온 에바다 농아원 비리 전모'

2. 수용시설 문제의 장단기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2-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정도 역할 밖에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내용을 가지고는 시설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적어도 시설에 인권침해가 사실로 나타날 때는 시설장에 대해서 일반사건보다 더 가중처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2-2 행정지도상의 구체적인 지침마련

시설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시설생활자의 욕구 향상에 부응하여 시설보호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합리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시설운영기준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져야겠다.

영국에서는 1984년에 만들어진 시설운영기준과 일본에서 1989년 마련된 시설운영지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3 복지시설의 개방화정도에 따른 차등지원책을 통한 기존시설의 환경변화 강구

우리나라는 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금 방식을 인원비례지원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은 시설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시설생활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나쁜 구조를 지속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시설의 개방화, 사회화의 정도에 따른 평가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설간의 차등지원책을 도입함으로서 시설의 개방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2-4 시설직원의 전문성 확보

시설생활자의 삶의 수준은 제공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직원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시설직원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수수준 문제(국·공립시설의 직원과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사경력의 유사직종과 동등한 보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수용시설의 경우 근무연수가 짧은 이유는 임금수준에도 있지만 승진에 있어서의 어려움, 시설장들의 독단적인 운영, 의사결정구조의 비민주성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일반의 낮은 평가 등이 그

이유라고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자기실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5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시설의 사유화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나타나고 있는 시설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는 시설설립자와 전문운영자가 분리되어야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적인 소유개념이 강한 우리사회 분위기에서 다른 여러가지 해결방안이 무산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게 되면 시설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현장에서 실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보다 클 것으로 생각된다.

3. 새로운 방식의 접근에 대해서

3-1 시설의 사회화를 위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함께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일반 사회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다 활발하게 보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교회, 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등에 장애인시설이 합축해서 지어진다면 물리적인 교류가 있지 않겠는가.

3-2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함께 하자 하는 시민들의 모임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러한 모임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용시설의 개방화가 실제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3-3 지역사회에 개방된 수용시설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회나 문화의밤을 개최토록 한다거나, 유치원, 체육관 개방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장애인수용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면 시설의 사회화는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까

3-4 지역복지서비스를 담당한다면

수용시설이 있는 지역에 다른 복지영역들 - 노인, 아동, 여성, 생활보호대상자등의 대상복지서비스대상 - 의 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면 장애인수용시설이 지역의 여러 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수용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이 덕 우 (민변 변호사)

1987년 소위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웠던 이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는 형식논리에 빠져 “강제노동”이라는 가장 야만적인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법률적 처리를 빠뜨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사태를 막지 못하였다. 이번 양지마을 사건을 계기로 다시 이른바 “부랑인”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현행법률로 어떻게 처벌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1. 감금죄

위 형제복지원사건에서 대법원은 특수감금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선고이유는 주제 발표문에 인용된 대로 내무부훈령과 지침, 치안본부의 부랑인보호대책, 부산직할시의 재생원조례 등을 근거로 형법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의 표현대로 “수용자의 이탈을 방지하며 충분한 ‘교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당행위의 근거라면 그 자체로도 헌법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즉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있음에도 범죄행위를 전제로 한 법원의 판결도 없이 시 공무원이나 시설운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강제로 구금된 수용자들을 마치 유죄판결이 확정된 “기결수”처럼 생각하고 “교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상 명령, 규칙, 처분 등의 위헌심사권은 법원에 있으므로(헌법 107조 2항) 위 정당행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내무부 훈령, 부산직할시 조례 등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였어야만 한다.

물론 당시 공판기록을 입수하지 못하여 정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으나 판결문의 내용으로 보아 검찰에서 위 규칙 등의 위헌성을 공판과정에서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위헌인 판결의 책임은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검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설사 검찰에서 위와 같이 위헌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판단의 문제에 귀속되고 형사재판의 특성상 법원에서 직권으로라도 위 훈령 등의 위헌여부를 판단하였어야 옳다고 본다. 결국 위 판결은

위헌인 훈령 등을 근거로 하여 야만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으로 다른 시설의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 폭행, 상해죄 등

수용시설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용인들에 대한 폭행, 상해 등도 별개의 범죄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검찰은 입증의 어려움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아 미온적인 대처를 하였다는 비판을 면 할 수 없다.

3. 강도죄의 적용

당시 검찰 내부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강도죄를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는지는 정확한 정보가 없다. 그러나 감금과 폭행 등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력의 착취에 있고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우는 이유도 그 핵심이 강제노동이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낸다. 이번 양지마을 사건을 접하고 인권단체들에서 검토한 결과 형법상 노예를 부려 치부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그만큼 근대적인 형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느꼈다. 그러나 형법상 가장 유사한 범죄유형으로는 강도죄가 유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어느 형법교과서이나 강도죄에는 재물강취죄와 강제이득죄가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반론은 없다. 그런데 항거할 수 없는 폭행,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없는 노동력을 강제로 제공토록 한 경우 강제이득죄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반론을 예상할 수 없었다. 예컨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살인을 한 경우 강도살인죄에 해당하고 택시기사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택시비 지급을 면탈한 경우 강도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수용시설에 강제고 감금하고 외부와 철저히 격리시킨채 폭행, 협박으로 공포심을 자아내어 강제로 노무를 제공토록 한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강도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수사상 현실적으로 수용인들이 항거할 수 없는 폭행, 협박에 의하여 노동을 하였는가의 입증이 문제될 수 있으나 수사의지에 따라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과는 달리 강제노동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본질에 맞는 법률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고 강도죄로 처벌하는데 이론상은 물론 현행 법률상으로도 아무런 장애도 없다고 보여진다.

4. 횡령, 사기죄 등

다른 수용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양지마을도 수용인들과 직원들의 수를 조작하거나 건물신축에 수용 인들을 동원하고도 수주회사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식비나 의류비,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이러한 범죄행위들이 사기, 횡령죄에 해당됨은 물론이고 그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로서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하여야만 한다.

5. 법률적 정비의 필요성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의 훈령이나 지침 등은 일단 수용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입퇴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입소절차나 퇴소절차를 규정한 규정을 자세히 검토하면 마치 관련 공무원들이 입퇴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 양지마을과 같은 시설의 존속과 그 시설내에서의 합법을 가장한 범죄행위의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허울좋게도 자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설내의 공장, 농장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노동의 틀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보건복지부 훈령 등은 위헌이므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특히 부랑인수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짙게 배어 있는 “부랑인”이라는 말도 사라져야 할 것임을 밝히고 싶다.

토 론

조홍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적 그늘진 곳에서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로 있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문제를 시혜적, 자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발표자 및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인권포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린다.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보면 1) 시설 수용인의 인권문제를 접근하는 관점에 대한 고찰 2) 사회복지 시설수용인의 인권 실태 3)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현행 수용시설 관련 법령의 문제점 4) 개선방향 등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하겠다.

인권을 사회권까지 확대한 현대 국가들의 인권개념 및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역사성에서 본 인권 문제들을 잘 정리했으며, 시설수용인의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이 현재의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에서 조차 '자유권 없는 생존(survival without freedom)'이라는 전근대적인 구빈법 시대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현실적인 면을 잘 지적하였다고 하겠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시각 정립의 전제로 1) 자유권과 생존권의 동시 보장 2) 인간다운 생존권의 보장 3) 권리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한 것은 인권과 관련하여 현대 국가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논리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수용인의 인권 실태를 최근 10년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을 중심으로 1) 쟁점이 된 인권침해의 유형을 ① 자유권적 기본권(특히 신체의 자유) 침해 ②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생존권 침해로 구분하여 인권 침해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대응 경향을 ① 성폭력과 폭행의 경우에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사법적 구제 실현 ② 강제구금과 강제노동의 경우에 사법적 구제가 실현되지 않음(부산 H원 사건 이후 사법부의 판결 경향)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점은 향후 사법의 방향을 가닥 잡는데 좋은 시사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지 않는 수용시설의 몇 가지 인권 문제들로 1) 무호적자 문제 2) 시설종사자들의 인권문제 등을 취급한 점과, 이러한 인권침해의 원인으로서 1) 시설 운영자 개인의 비도덕성·비전문성 2) 행정감독기관의 감독 부실 3) 국가책임의 미흡 : 인권보장의 법적 제도의 미비 등을 자세히 지적한 것은 매우 홀륭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현행 수용시설 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 형제복지원 사건과 그 이후의 사법적 대응양식 및 '양지마을 사건'에 대한 적용법령을 예시하여, 현행 사회복지수용시설의 강제보호조치의 법률상의 문제점으로 행정처분에 의한 수용처분의 위헌, 위법성을 ① 헌법상의 신

체의 자유에 대한 검토 ② 행정처분으로서의 보호조치의 위헌성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강제노역, 자유퇴소 등 제한조치의 위헌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그 개선 방안으로 1) 국가책임의 강화 2) 입·퇴소의 자유 보장 3) 시설의 전문화 및 소규모화 4) 시설 운영의 민주화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제시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제부터, 몇 가지 보완 내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피력하고자 한다.

1. 시설수용자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탈시설화 수용정책 기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수용자의 인권 차원에서 볼 때, 이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의 일반인과 더불어 생활하게 하는 탈시설화, 정상화, 통합화 정책수립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시설복지 중심으로부터 제가 복지 및 지역사회보호 위주로 전환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대규모 시설수용을 전제로 하는 기존 수용 정책 방향은 완전히 바꾸어져야 한다.

다수를 위해 소수의 수용을 통한 격리를 전제로 하는 현행 시설수용 정책은 결단코 반인권 정책의 표상이라 하겠다.

2. 수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 평가를 통한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는 제도의 확립

발표자가 강조한, 입·퇴소의 자유 보장, 시설의 전문화 및 소규모화, 시설 운영의 민주화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무엇보다도 수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공신력 있는 전문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 특히 비리 시설의 공통된 특징인 시설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의 봉건성과 폐쇄성 문제, 즉 가족과 친지로 구성된 이사회, 직원 등 소위 족벌체제를 구성하여 전횡을 휘두르는 시설의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비전문가인 행정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지도감독제를 수정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시설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정기 평가를 받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이끌어야 한다.

3. 수용시설은 국공립, 재가복지사업이나 지역사회보호사업은 민간이 맡는 2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발표자가 제안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를 위해 기존의 민간 수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국가 직영 및 공영 시설을 운영할 것과 아울러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재가복지사업이나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 전문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는 즉, 수용시설은 국공립, 재가복지사업이나 지역사회보호사업은 민간이 맡는 2원화 방안은 재정 문제에 따른 고육지책의 측면은 보이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

오히려 시설수용자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수용자의 인권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염두에 둔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을 기반으로 하여 민간기관과의 동반자적 관계의 확립이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여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설을 맡아 직접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은 민간기관에게 맡기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관에게 수용자를 역할 의뢰하고 시설에 대한 엄정한 평가 지도감독, 홍보 등 간접적 서비스 전달의 일을 맡는 것이 국가 직영이나 공영 시설운영 보다 효과적이며, 훨씬 적절한 것이다.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과 전문화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대상자들의 인권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들을 현장에서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또한 심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시설 운영자(원장)들의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는 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 등 노동조건의 3요소 어느 것에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 이들의 노동시간, 임금을 최저임금제에 적용하면 엄청나게 침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노조활동도 불법시되고 있으며, 보수 교육 등 전문성 강화의 기회도 다른 복지기관 종사자 보다 극히 빈약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회복지사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친인척이나 지인들로 채워지며, 문제가 되었던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채용을 기피하며, 종사자들에게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수용된 입소자들 중에서 시설장의 심복을 만들어 직원으로 채용하여 수용인들을 통제하는 방식도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따라서 시설수용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첨경은 바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종사자의 자유권, 사회권 등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양지마을 · 송현원 퇴소자 면담결과 1차 보고서

* 이 보고서는 지난 98년 7월 16일과 그 이후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서 퇴소한 31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퇴소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상황을 중심으로 진술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므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후 보다 풍부한 진술을 근거로 보다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998년 8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양지마을 진상조사 경과〉

- 97년 12월 29일 자정경 양지마을 담을 넘어 박영섭(38)과 박영한(23)이 1차 탈출
- 2월 10일 저녁 용산구청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혀 용산구청에 인계됨.
- 2월 11일 새벽 2시 양지마을 도착, 실림 박탈, 각각 남녀 생활실 생활, 간부직 박탈 가방 공장 노역
- 7월 1일 새벽 2시, F동 2층 생활실 세면장 쇠창살을 낮에 절단해두었다가 탈출하게 됨. 5명 이 결행했는데, 박영섭 씨외 3명 탈출에 성공.
- 7월 6일 7월 1일 탈출자 중 박영섭(38)씨 인권운동사랑방에 도착하여 양지 마을의 인권침해에 대해 증언 시작.
- 7월 13일, 조치원 등 현지 상황에 대해 간접 취재하여 박영섭씨 증언 확인함.
- 7월 14일 저녁, 16일 새벽 결행을 다짐하고 준비에 착수
- 7월 15일 오후 11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성재 의원, 김병후 원장(연희정신 건강크리닉 원장), 언론기자 40여명 천안에 집결
- 7월 16일 오전 7시경 천안 출발
오전 7시 30분경 양지마을 도착, 진입
낮 12시경까지 양지마을과 송현원 현장 조사작업 진행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이성재의원,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김병후 원장등이 경찰과 충청남도, 충청남도 연기군 직원의 입회 하에 양지마을과 송현원 일부 원생들에 대한 심사.
오후 6시경, 양지마을 18명(여자 4명), 송현원 5명 등 퇴소자 시설에서 나옴.
오후 6시30분경, 양지마을에서 제공한 버스로 퇴소자 및 진상조사단 관계자 이동
오후 7시 30분경, 개미고개 도착하여 묘지 확인 작업
오후 8시경, 대전으로 출발
오후 9시 10분경, 대전시 대홍2동 성당내 가톨릭농민회관 도착
- 7월 17일부터~18일 오전 11시까지, 대전 가톨릭농민회관에서 숙식 해결하면서 신상관계 및 증언 조사작업
- 7월 18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로 출발
오후 3시경,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덕우 등 5명의 변호사와 1차 면담
오후 8시경, 영등포 시립 근로자 합숙소와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 여관 등 숙소에 도착
- 7월 19일, 민변 변호사들 퇴소자들과 만나 진술 청취, 법적 대응 검토
- 7월 22일, 기자회견

* 7월 17일 0시부터 14시까지 보건복지부 김경수 사무관 등 2명 양지마을 감사

- * 7월 21일, 양지마을 측 A4 용지 8쪽 분량의 해명서 발표
- * 7월 21일, 조치원 경찰서 원생 최고웅, 이진수, 김화배 씨등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보건복지부 감사 진행
- * 7월 23일, 양지마을 원생 200여명 퇴소 요구 농성, 이날부터 20~40명 단위로 양지마을에서 퇴소가 진행됨.
- * 8월 2일, 조치원 경찰서 양지마을 총실장 이상덕을 구속하고, 6명의 실장급 간부원생 불구속 처리함. 이는 양지마을에서 일어난 폭력행위 등을 원생들에 의한 것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여 염려됨.

1. 노재중과 친인척 계보

사회복지법인 천성원(68. 12. 1. 설립) 산하에 충남 연기군에 양지마을(부랑인수용시설), 송현원(정신요양원), 양지요양원(장애인수용시설), 양명보육원(고아원)을 대전 대화동 인근에 자강원(부랑인수용시설), 온달의 집(정신장애인 수용시설, 여자를 수용하는 평강의 집이 내부에 존재), 정화원(?), 원명학교(농아 특수학교) 등 8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대화동의 한일병원과 대전 신탄진의 한일병원도 노재중의 소유라고 한다.

노재중은 형제복지원과 함께 87년도에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대전 성지원(현 자강원)의 원장 출신으로 복지재벌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노재중은 그의 친인척을 시설의 요직에 배치하여 철저하게 족벌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상 비리 등이 철저하게 은폐될 수 있다. 또한, 노재중 본인이 과거 성지원 사건으로 구속된 경력도 있어 부적격자이지만, 다른 가족들도 제대로 자격을 갖춘 경우는 드문 것 같다. 이런 무자격 친인척을 대거 핵심적인 직위에 배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이루 있으며, 천성원 전체는 결국 노재중의 왕국이나 마찬가지다.

(1) 노재중과 본처, 자식, 친인척관계

- ① 노재중(56), 현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이사장. 성지원 원장이었고, 부랑인 시설연합회 총무를 역임. 최종학력은 충남대 경상대학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유자.
- ② 윤진순(57), 노재중의 본처, 온달의 집 원장
- ③ 노한호(33세 정도)-노재중의 첫째 아들, 천성원 기획실장으로 노재중의 비서역할을 함. 노한호의 처는 원명학교 교사라는 말이 있다.
- ④ 노준호(28세 정도)- 노재중의 둘째 아들, 평강의 집 총무. 미혼
- ⑤ 노완호(24세 정도)- 96년도 방위병 제대후 송현원 총무로 재직중. 미혼. 노재중의 후처인 박정자의 아들로 입적하였다고 하며, 노재중이 시설을 물려주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 함.
- ⑥ 노**- 딸, 결혼 전 원명학교 교사로 재직

- ⑦ 노동성- 98년 6월 사망, 자강원 원장. 친척, 자강원 창설자* 자강원이 성지원에서 바뀐 것.
- ⑧ 노재기- 노동성씨 사망 이후 현 자강원 원장, 이사장 사촌동생
- ⑨ 노만호- 일반 직원, 노재중의 면 친척?

* 과거 형제복지원의 박원장이 가끔씩 찾아와서 노재중에게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도하고 감. 매우 친근한 관계임.

(2) 박정자의 친인척관계

- ① 박정자(51세 정도)-노재중의 후처, 송현원 원장, 전 원명학교 교사, 노재중의 비서 출신
- ② 박종구(40)-양지마을 원장. 박정자의 친동생, 전 양지마을 총무였다가 87년부터 원장
- ③ 장병렬(여, 37세 정도)-박종구 원장 처, 전 양지마을 직원. 자강원 총무?. 공무원 출신. 85년 박원장과 결혼
- ④ 노현희(25 정도)-박정자의 딸, 사회복지사, 송현원 총무,
- ⑤ 박종민- 원장 동생-양지요양원 총무로 재직중 직원간의 불화 문제로 98년 2월 퇴직하였고, 박종민의 처도 요양원 간호사로 재직중 같이 퇴직함.

* 양지마을내 매점은 원장 개인사업이라고 원생들은 알고 있다.

2. 양지마을 개관

(1) 시설 개관

- ① 소재지: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산 118-2
 - ② 시설명: 양지마을
 - ③ 시설종별: 성인남녀 부랑인 시설
 - ④ 시설장 박종구(원장)
 - ⑤ 수용정원: 475명 현원: 464명(97년 8월 현재, 보건복지부 자료)
 - ⑥ 시설설치일자: 83. 2. 8.
 - ⑦ 연락처: 전화 0415)62-7003 팩스 0415)62-7007
- * 같은 주소지에 송현원(정신요양원)과 양지요양원(양로원 겸 정박아, 신체부자유자 수용시설)과 함께 한 담장 안에 있으며, 세 기관의 전체 수용인원은 약 8백명 정도임.
- ⑧ 시설: - 정문 입구 왼편에 3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고, 경계에 3미터도 넘는 콘크리트 담장(교도소 담장과 같음)이 있으며, 뒷산 쪽 담장 안에 1개동의 건물을 신축중이다.

- 원생들이 거주하는 생활실은 A, F, B 세개 동이며, 쇼핑백, 자전차, 철공, 가방, 볼, 도장, 자동차공구함, 등공예, 호차 등의 공장이 있고, 식당이 있음.
- B동 1층에 매점과 휴게실이 있으며, 매점 옆에 여자 생활실이 있고, 2층은 1층의 절반으로 매점 위 부분에 호차 공장이 있음. 각 건물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생활실은 중앙 출입구가 있고, 출입구 양 옆에는 간부들의 살림방이 각 하나씩 있으며, 다시 오른편과 왼편 출입문이 있으며, 안 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5평 정도의 큰방 2개가 있고, 맞은편으로 3평 정도의 작은 방이 3개씩 있음. 큰방에는 12~15명 정도가 수용되며, 작은 방에는 6~7명씩 수용됨.
- 생활실의 방마다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으며, 밤에는 생활실 밖에서 문을 잠금.
- 박정자 부원장, 오명영 간호사의 사택은 양지마을 담장에 붙어서 내부에 위치함.

(2) 주요 직원

- ① 오간호사: 개인적으로 원장과 친분이 매우 두터움. 박원장이 모든 것을 상의함. 정식 간호사 자격증은 없고, 간호보조사 정도일 것으로 판단됨. 원생들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원생들에게 피도 눈물도 없이 악랄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85년에 결혼한 남편 신용하와의 관계에서 아들이 하나 있으며, 남편은 자강원에서 있다가 탈출하여 다시 붙잡혀서 한일병원 정신 병원에 있다가 다시 탈출, 다시 잡혀서 97년 송현원 독방으로 와 있다가 현재는 한일병원 정신병 동에 수용되어 있다고 함.
- ② 손기섭(양지마을 담당)- 상담요원이지만 무자격자. 97년 초 입사. 30세가 못됨. 키가 180센티 미터 정도. 둉치가 크고, 과거에 복싱선수였다고 하는데, 원생들에게 구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 ③ 그외 사무실 여직원 약간명이 있다. 또한, 주로 감시 업무를 맡는 일반직원 이 약 20명 가량 있다.

* 간부 직원중 원장과 손기섭 주임이 가장 많이 구타를 함.

* 법정 직원 대신에 원생을 대신 직원으로 올려놓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3. 송현원 개관

(1) 시설 개관(자료 확인이 어려워 원생들 증언을 기초로 작성함)

- ① 소재지: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산 118-2(양지마을, 양지요양원과 함께 있음)
- ② 시설명: 송현원
- ③ 시설종별: 성인남녀 정신요양원

- ④ 시설장: 박정자(원장)
- ⑤ 수용인원: 320명(남 210명, 여 10명)(위탁자가 약 80%, 그외는 단속과 고아원 등 시설에서 이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음) 정신질환자로 한일병원에 36명이 입원해 있는 상태임
- ⑥ 시설: - 양지마을 왼편에 위치하며, 본관, 신관, 식당의 세 건물로 구성되어 있음.
 - 생활실은 본관과 신관에 있으며, 본관에 방 14개, 신관에 방 9개가 있다.
 - 생활실마다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고,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다.
 - 신관 하층의 경우 방 하나에 4명씩, 안에 세면장 및 화장실이 있고, 본관 방에는 7,8명씩 수용된다.
 - 6개의 독방은 2평 미만으로 쇠창살, 식구통, 수도, 수세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1~4호실까지는 햇빛이 하나도 들지 않으며, 5,6호실은 햇빛이 잘 들판.
 - 본관 지하실에 작업장이 있다. 본관 2층에 강당이 있고, 이곳도 작업장으로 이용

(2) 주요 직원

- ① 총무- 노재중의 셋째 아들 노완호, 한총무가 96초까지 재직하였다.
- ② 주임-최정호 주임
- ③ 상담직원-송 아무개 직원(송선생이라 부름)
- ④ 소모품 담당-김직원, 노완호 총무의 친구
- ⑤ 그외 직원으로 이직원, 윤직원이 있으며, 박직원(여자)은 여자 원생을 관리
- ⑥ 간호사 3명-최승화(21세 가량), 김미자(23살 가량), 3명에서 2명으로 줄음(지난 6월 요양원으로 편은미 간호사 옮김). 실제 자격증 소지 여부는 모르고, 간호보조사일 가능성이 높음.

* 이직율이 높아서 최초 두달 정도를 넘기기 힘들다.

* 직원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지 않는다.

* 촉탁의로 청주 제일병원 김미영 과장이 있으나, 한달에 한번 정도 와서 회진 들듯이 한바퀴 돌고 끝난다. 의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원생들이 원생들 약을 처방하거나 양을 조절 한다(노재중 이사장과 박종구 원장도 개입한다).

일주일 중 토요일 두시경 와서 한 30분간 환자실 진찰을 한다.

4. 원생 지휘체계

양지마을과 송현원 모두 이사장과 원장등 주요 간부 직원들에 충성하는 원생간부를 세워 원생들에 대한 치밀한 통제와 지휘를 시행한다. 아마 이런 점은 천성원 산하의 다른 시설에도 거의 똑같이 시

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간부원생들에게는 시설 내에서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과 살림(동거녀와 한 방에서 생활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미끼를 활용하여 통제한다. 주요 간부직원으로부터 원생 간부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는 일부 기능적 간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중적 폭력행사 구조와 일치 한다. 마치 원생들간의 자치조직처럼 위장된 이 지휘체계는 직접적으로 시설 책임자에게 돌아올 피해를 막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하다. 양지마을이나 송현원 모두 시설이나 직원, 원생간의 지휘체계 모두 교도소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양지마을

- ① 총실장(이상곤, 57세): 원생의 생활과 작업, 규율을 모두 책임진다. 이사장과 원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원생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과거 형제복지원 출신으로 원생들에게 폭행을 많이 가해 원생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존재다.
- ② 반장: 공장 작업 책임을 맡은 원생간부 작업공장별로 가방, 볼, 영농, 예비군(원내 노가다), 목공, 호차, 자전차 등의 반장이 있다.
- * 가방 반장 진종식- 형제복지원 출신. 보통 체격이지만, 성격이 포악하다.
- ③ 살림자는 총 16쌍. 간부 원생들에게 여자를 이사장이 지목하여 살게 하며, 생활실 밖 현관에 방을 마련하여 준다.
- ④ 선도(김동식): 주로 원생들의 탈출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실장: 생활실의 책임 간부 원생
- ⑥ 서무와 보조: 간부 원생의 말단으로 실장의 지휘를 받으며, 보조한다.

(2) 송현원

- ① 감독: 최고의 원생간부로 하급 직원들보다 권한이 막강하다.
 - 진영준감독(42): 보통 진감독이라 불리며, 신관 생활실을 책임진다. 포악하기로 유명.
 - 이성각감독(49): 보통 이감독이라 불리며, 본관 생활실을 책임진다. 거친 욕설을 잘한다.
- * 송현원의 경우는 원생 중 감독들만 살림을 한다.
- ② 실장: 총실장은 없다.

- 실장은 총 6명으로 남자 실장은 본관 A동과 B동, 신관 상층과 하층에 각 한명씩이며, 여자 실장은 A동과 B동에 각 1명씩이 있다.

5. 의식주 및 문화생활

(1) 피복 및 의생활

97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랑인 시설의 경우 1인당 피복비로 연 53,440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런닝, 팬티세트 연 4벌, 동내의 연 1벌을 원생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양지마을의 여성이나 송현원의 경우는 기본적인 의생활도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매우 불결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됨을 알 수 있다.

① 양지마을 남자 원생의 경우

- 팬티와, 런닝 세트 2벌, 상의 티셔츠 2벌, 하의 2벌, 양말 2족, 담요 3장, 수건 1장이 개인별로 지급된다. 겨울에는 동내의 2벌과 돛바 1벌이 지급된다
- 작업복과 실내복은 구분이 없다. 주로 츄리닝 하나로 작업과 생활을 다함. 현옷을 시설에서 기증받으면 골라 입게 하지만, 최근에는 기증이 거의 없다.
- 신발은 운동화 또는 고무신 중 택일하여 한 켤레를 지급한다.
- 물품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헤쳤을 때는 그 물품을 갖고가서 교환한다.
- 칫솔은 개인별로 지급이 되나, 치약은 방별로 하나씩 매달아 놓고 공동으로 사용한다.
- 각자 세탁하며, 빨래비누는 방마다 하나씩 준다. 담요는 1, 2년에 한번씩 세탁한다.

② 양지마을 여성의 경우

- 동절기에는 속옷을 보름내지는 20일, 하절기에는 열흘에 한번씩. 전체가 세탁하여 빨아입는다. 이때 전체가 옷을 갈아입는다. 여성들이 매우 불결하게 느끼며, 고통을 호소한다.
- 옷은 개별 지급이 없으며, 공동 소유다. 빨래할 때 실장이 잡하는 대로 준다. 실장에게 밀보이는 경우는 입소 때 들어온 옷만을 주거나, 겨울에도 목이 끽여 추운 옷을 고의적으로 준다.
- 여름에는 팬티, 런닝, 브레이지어를 지급하지만, 실장에게 밀보인 경우는 브레이지어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겨울에는 기본 속옷과 내의를 준다.
- 생리대를 타 쓰는 것도 실장의 욕을 먹으며 타 쓰게 된다.
- 담요를 개인용이 없고, 순서대로 마구 덮고, 냄새가 지독하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오줌이나 변을 싸는 경우에 세탁하며, 전체적으로는 이불을 한번도 세탁하지 않았다.
- 남녀 같이 세탁기가 없으며, 소형 짧순이만 있다.

③ 송현원의 경우

- 옷(내복과 원복)은 1주일에 한번씩 갈아입는다.
- 모포는 한여름에도 겨울 모포를 사용하며, 1년에 대강 원생들이 발로 밟으며 세탁한다.
- 세탁기는 없으며 소형 짧순이를 필요할 때만 이동하여 사용한다. 담요가 매우 헐어서 먼지도 많으며, 텔지도 않는다. 이에 따라 피부병이 고질적으로 발생한다.
- 원생들끼리 1주일 간격으로 빨래를 하고, 속옷과 겉옷 모두 공동으로 사용함.
- 소독은 거의 하지 않는다.(보건소에서 외부 1년에 한두번)

* 세 경우 모두 피복이 충분치 않으며, 특히 겨울에는 추위를 많이 느낀다.

(2) 식생활

정부의 부랑인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백미 456g/일, 정맥 114g/일, 부식비로 1일 1,406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양지마을과 송현원의 경우에는 현저히 질이 낮은 밥과 부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비로 제공되는 지원금의 착복이 의심된다.

- 밥은 양은 충분하지만, 질낮은 수입쌀(안남미)을 사용하기 때문에 밥맛이 없다. 노동을 해야 하니까 밥은 많이 먹는다.
- 부식은 최근 국을 포함하여 3찬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짜거나 멀건 상태이며, 양도 매우 적다.
- 96년 함께 있는 시설의 양지요양원에 영양사가 오고 나서 부터 97년 여름부터 부식이 좋아지고 있는 편이다. 이전에는 1찬만 나올 때도 있었으며, 기증되는 부식이 양이 많은 경우 그 부식만으로 반찬이 제공되고는 했다. 부식에 양념이나 조미료는 사용되지 않는다.
- 값싼 것을 시장에서 사오기 때문에 종종 상한 생선이나 채소가 원생들의 부식거리로 제공되고는 했다.
- 간식이 전혀 없다. 94년까지는 양지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빵 한개씩이 간식으로 제공되었다. 일반미를 정부미로 바꿔서 그 구입가의 차이로 빵을 만들었던 것이지만, 원생들이 간식은 안 먹어도 일반미를 먹겠다고 하여 간식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후 한두달 일반미로 나오더니 계속 정부미로 나온다.
- 양지마을 가방공장 야간작업시 덕일통상에서 제공하는 사발면이나 봉지라면을 간식으로 먹는다. 봉지라면의 경우 봉지에 스프를 풀고, 약간 뜨거운 물을 넣어 먹으므로 제대로 된 라면 맛을 느낄 수 없다.
- 담배는 솔의 경우 1주일 1인당 2갑으로 제한되었지만, 최근에는 솔이 팔려서 제대로 공급치 못 한다.
- 매점에는 담배 외에 과자나 라면 등이 있으나, 보통 한달 8천원 이하를 받기 때문에 사먹을 수 있는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 매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거래장을 이용한다. 현금을 주지 않는 것은 탈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밥을 남길 경우 혼난다. 욕설로 퍼붓고, 귀싸대기를 때린다.
- 노가다 같이 힘든 일을 하는데도, 음료수 한잔 없다. 3개월, 4개월동안 4,5만원 정도

(3) 주거생활

- 대체로 비좁은 공간에 집단 수용되어 있는 상태로 개인의 사생활은 있을 수 없다. 대부분의 원생들은 주거생활을 누릴 여유도 갖지 못한다.
- 송현원의 경우 약 20명 가량의 폐결핵 환자도 같이 수용하여 있으나, 실내에 먼지가 너무 많은 관계로 폐결핵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감염될 우려가 있다.
- 문화생활은 TV 시청과 화투놀이 뿐이다.

6. 수용관계

다음 장의 표에서 보듯이 양지마을의 경우 87년 성지원(현 대전 자강원)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이후부터 부쩍 수용인원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심사귀가의 경우 전체 5명으로 나와 거의 심사에 의한 퇴소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것만으로 강제수용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소위 전원관계에서 양지요양원과 송현원 전원이 많은 이유는 노동력의 활용상 양지마을에서는 더 이상 소용없는 경우와 소위 CP라는 신경안정제의 과다투입으로 인해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가 아닌가 싶다. 양지마을이나 송현원 모두 한번 입소하게 되면 세상과는 철저하게 단절된다. 이 곳 시설에 입소하면 탈출하거나 보호자들이 찾으려 오지 않는 경우에는 평생토록 강제노역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개미고개'(공동묘지)에 묻혀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

(1) 양지마을 원생 명부에 나타난 수용관계

아래의 표들은 지난 7월 16일 양지마을에서 복사해준 원생 명부를 분석한 것이다.

연도별 양지마을 입소자 현황

(1983년부터 1998년 7월 16일까지)

년도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합계
명	9	5	9	6	3	34	144	129	147	162	189	149	139	176	128	92	1,521

양지마을 퇴소 사유별 통계

(1983년부터 1998년 7월 16일까지)

퇴소 사유	자진 귀가	연고 귀가	커가 조치	커 가	사 망	도 망	전 원	요양원 전원	송현원 전원	경찰 인계	무단 퇴소	자진 입원	탈 퇴	심사 귀가	승 인	기 타	현원	합계
명	125	328	98	36	130	48	56	76	151	7	1	7	1	5	3	1	448	1,521

* 표의 분류에서 ‘요양원전원’이라고 함은 양지요양원이며, 명부에는 ‘양요전원’, ‘요양원전원’이라고 두가지로 표기된 것을 합한 것이다.

* ‘커가’와 ‘자진귀가’, ‘연고귀가’의 차이는 알 수 없다.

- 명부에서 더 분석되어야 할 것은 각 지역별 의뢰처, 수용기간 등으로 이는 입소과정의 불법성, 수용기간의 장기화 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입소과정의 문제점

‘집없이 거리를 헤매는 부랑인들을 수용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한다’는 시설의 취지와는 달리, 단속반 또는 경찰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부랑인이든 아니든’ 무차별적으로 잡혀갔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다. 양지마을의 경우 주로 시설과 가까운 천안역이나 조치원역 뿐만 아니라 대전이나 온양 등 충청도 등지에서 사람들을 납치식으로 잡아온다. 이 부분은 경찰과 양지마을과의 유착관계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대전의 자강원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노재중 이사장이 찍어서 양지마을로 데려온다. 또, 서울이나 경기도 등 타지역에서도 의뢰를 받아 납치하다시피 끌어와 수용한다. 이는 송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93년 입소한 이상흔(57) 씨의 경우- “천안의 한 다방에서 커피 한잔을 시켜 먹다가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가방에 있던 돈 9만원이 없어졌다.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세 번을 신고할 때까지 오지 않았다. 그래서 파출소로 쫓아가 항의하니까 나를 뒷문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가죽수갑을 채운 채 얼굴에 가스를 뿐였다. 이를 뒤, 파출소장의 사과를 받기 위해 다시 파출소를 찾아갔는데, 잠시후 세 사람이 나타나 차에 태워 싣고 갔다.”

◇ 93년 3월 입소한 김재성(58) 씨의 경우- “후배를 만나러 천안에 내려갔다. 서울로 올라오는 표를 미리 끊고 내려갔는데, 집(경기도 이천)에 들리기 위해 표를 환불하러 창구에 갔다.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때 경찰관이 나타나 ‘잠깐 이야기하자’며 역전 파출소로 데려갔다. 신원조회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세 사람이 나타나 차에 싣고 데려갔다.” 이 씨와 김

씨는 모두 “끌려갈 당시 술은 입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닥치는 대로 ‘단속’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직접 ‘단속’을 다녔던 김영화(58·원생) 씨의 진술과도 일치된다. 김 씨는 “단속 과정에서 신원확인절차는 없었다”며, “일단 원장 지시로 단속을 나가면 ‘저거 실어’라는 말에 따라 실어 갔다”고 밝혔다.

(2) 입소 심사

보건복지부가 정한 ‘생활보호사업지침’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일단 시설에 들어온 부랑인에 대해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종교인,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교육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장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원생과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억울한’ 입소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지마을과 연기군청측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거기엔 고의적으로 ‘의무’를 저버린 혐의도 짚어 보인다.

대다수의 원생들은 “군청 직원과 말 한 마디 나눠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원장과도 면담 한 번 해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원생도 있다. 또한 상담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생들에 따르면, 군청 직원이나 원장과의 상담 내용은 ‘주소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또, 상담 과정에서 “형제와 보호자가 있으니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알겠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기군청측은 “입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올해 입소한 윤석만(36) 씨는 “상담을 한다면서 시종 유팔만 지르는 등, 군청 직원은 양지마을을 위해 일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관할 관청의 책임방기는 이같은 인권유린을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빚어왔으며, 나아가 시설과 관청이 서로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3) 퇴소 절차와 심사

일단 양지마을과 송현원에 들어온 원생이 퇴소심사를 거치거나 보호자와 연락하여 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수용된 원생의 상당수가 5년, 10년 이상 장기간 수용되었다는 점이 뒷받침해준다. 원

생의 퇴소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사업지침’은 “시설의 장이 원생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원생 중에 퇴소를 원하거나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해 퇴소심사서 및 의사진단서 등 관계자료를 매월마다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지마을이나 송현원에서는 아예 퇴소심사라는 것이 없다. 원생들 가운데 한 달에 한 번은 커녕, 수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상담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여럿이었다. 입소심사와 마찬가지로 퇴소심사 역시 엉터리였던 것이다.

(4) 외부와 연락 차단

퇴소심사조차 없는 상황에서 양지마을 또는 송현원을 떠날 유일한 길은 가족이나 연고자가 면회를 와서 데려가는 것뿐이다. 그러나, 양지마을측은 가족의 면회마저도 방해하고 가족이 면회 온 사실을 원생에게 숨기기조차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진상조사단과 함께 양지마을에서 나온 이상흔 씨를 비롯, 가족과 연락을 취한 퇴소자들은 보호자들이 면회왔다가 되돌아갔으며, 편지 한통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원측에 분노했다. 이상흔씨는 곧바로 청주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동생과 아들이 세 차례나 면회를 갔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 씨는 양지마을에 있던 동안, 가족이 면회 온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으며, 면회온 가족들은 “이 씨가 나가서 생활할 수 있을 때쯤 되면 연락하겠다”는 양지마을측의 말만 듣고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이씨는 양지마을에서 생활하면서 투약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선 전화통화가 허락되지 않으며(공중전화 한 대 없다), 편지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나 연고자와의 접촉이 ‘원천봉쇄’ 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송현원 퇴소자인 김은태씨의 편지는 발송되지 않은 채 상담일지 철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압수된 자료 속에서 발견되기조차 했다.

(5) 퇴소자 명단 조작

심지어 양지마을은 퇴소하지 않은 원생을 서류상에 퇴소자로 기록해 두기까지 했는데, 이는 퇴소시키지 않고 맘껏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문병기(41) 씨와 송만성(48)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귀가’ 조치된 것으로 서류상 기록되어 있으나, 지난 20일까지 양지마을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씨는 양지마을에서 미싱기술을 전수해 온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진상조사단이 다녀간 이후인 20일 갑작스럽게 ‘귀가’ 조치됐는데, 이에 대해 문 씨는 “명단에 없기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퇴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손동수(30) 씨는 지금까지 양지마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영한(20·서류상 94년 3월 14일 귀가), 김대역(16·94년 4월 7일 연고귀가)씨 등도 서류와는 달리 모두 양지마을에서 생활중이었다.

(6) 불법적인 인원 이동

퇴소자 중 이종학씨의 경우나 탈출자인 박영섭씨의 경우는 대전의 자강원에 입소하였다가 이사장 노재중의 눈에 띠어 양지마을로 오게 된 경우다. 즉, 노재중은 노동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 부랑인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노동에 투여한다. 이에 따라 자강원 원생과 송현원 원생이 가방 등지의 공장에 취역을 하며, 반대로 양지마을 원생들이 자강원 신축공사에 투입되기도 한다. 자강원에는 20~40명씩이 신축공사를 위해 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노재중의 소유인 한일병원에도 양지마을의 인력이 나가서 잡일을 하고 있다고 퇴소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한편, 양지마을측은 보건복지부 특감이 시작되기 직전인 명단에 없는 문 씨와 송 씨를 풀어준 데 이어, 20일 양지마을에서 생활중이던 송현원과 자강원(대전 부랑인시설) 소속의 원생들도 각자가 속한 시설로 돌려보냈다.

7. 폭행 및 성폭행 의혹

양지마을과 송현원은 충충적인 폭력구조가 고착되어 있다. 최고 경영진부터 폭력을 원생들을 굴복시키려 하기 때문에 오로지 힘있는 자만이 군림하는 약육강식의 세계에 길들여지게 된다. 많은 원생들은 구조적인 폭력을 회피하기 위해 동물적인 본능으로 생존하는 법을 배우며, 이에 따라 점차 인간적인 존엄성은 사라지고,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폭력은 최근 퇴소자의 증언에서 확인되듯이 목숨을 건 폭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럴 경우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은 분명하다. 인간을 강제로 감금하고, 폭력으로 굴복시키려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1) 폭행 사례

① 사례 1

송현원의 정대영씨는 92년 3.15사건 때 탈출했다가 잡혀왔는데, 독방에서 노재중으로부터 몽둥이로 한 시간동안 셀 수 없이 맞았다. 노재중의 지시로 직원인 인철기가 빨간색 고무장갑을 끼고 고추가루를 눈에다가 비볐다.

② 사례 2

양지마을의 이상흔씨는 94년 11월 18일, 오후 6시15분부터 9시 20분까지 구 F 동하 생활실 안에서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원장 박종구로부터 머리를 빽빽 깎이고, 무릎꿇리고, 가슴을 운동화 발로 거세게 채였다. 뒤로 넘어지니까 얼굴을 발로 차고 그런 이유로 오른쪽 위 어금니 일부가 깨져나갔다. 이빨 치료는 못받았다. 이유는 생활실 친구 강창룡이 적어다 준 연락처를 갖고 있는 것이 발각된 때문이다. 강창룡과 김종두도 같이 머리가 깎였다.

③ 사례 3

송현원 정동원씨가 당시 양지마을에 파견나가 있던 91년 9월경, 박종구와 직원 김기섭(당시 양지마을 소속)에게 도망가려 한 적도 없었는데, 도망을 모의했다며 낮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두시간 반동안 등공 사무실과 독방 앞 마당에서 박원장에게 등공 나무로 발목을 맞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맞고, 김기섭한테는 수없이 주먹과 발로 수없이 맞았다.

④ 사례 4

손기섭(양지마을 상담 주임)은 원생들이 하나같이 죽여야된다 할 정도로 원성이 자자하다. 박종문(현재 교도소 복역중)이 97년 8월중순경, 박종문의 이삿짐을 다 압수하여 온 것에 항의하자 많은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는 데 샌드백 치듯이 40분을 계속 때렸다. 몸과 등허리가 안티프라민을 바를 수 없을 정도였다. 박종문은 이튿날 가스통 3개에 불을 붙여 폭발시켰다. 이 사건으로 가스실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소방 물탱크가 불탔다.

⑤ 사례 5

송현원 남대현(56)씨가 97년 5월경, 지하실에서 작업중 이성찬 원생이 황정숙 여자 원생의 목을 잡고 땅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자 진감독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진감독이 남씨를 때리려 하는 것에 되받아치려 해서 진감독이 노총무에게 전화했다. 노총무가 와서 “너는 왜 진감독 말을 순응하지 않고, 반항하느냐”면서 “너 독방에 들어갈래, 빠따 맞을래?” 하여 빠따 맞는 것을 택했다. 그 뒤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⑥ 사례 6

송현원 심희운(44세)씨는 98년 5월경, 신관 하층에서 생활실에서 잠을 잘 취하지 못하여 커피를 동료들에게 달라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 언성이 높이며 싸웠다. 이어 심씨는 203호실 유리창 한장을 깼다. 진감독이 알고, 201호실 앞 복도에 끓어앉히고, 주먹과 발로 무수히 구타하였다. 심은가슴, 옆구리를 구타당했다. 병원 입원. 엑스레이 짜은 결과 갈비뼈 두대가 부러졌다.

- 7월 16일 현장에서나 이후 퇴소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건은 무수히 많이 수집되었다. 일상적으로 폭력이 난무하는 시설의 문제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위의 여섯가지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도 아니고, 그 일부일 뿐이다. 일상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이니 언어폭력을 말할 것도 없다.

- 이런 폭행 이후에는 반드시 독방에 감금하거나(6년 이상 감금된 경우도 있었다), CP라는 신경안

정체를 강제로 투여한다.

(2) 자살사건 및 사망사건(송현원, 양지마을의 경우는 별도 정리)

① 사례 1.

배경선(당시 47세정도), 93년 연초. 평소에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아무래도 포기해야겠습니다.”라고 흥의배, 남대현(현재 송현원 있다)에게 말했다. 당일날 오후 목매 독방에서 목매 죽었다고 하고, 가족들이 현관문 유리창을 부수고 들와 시체를 보자고 했다.

② 사례 2

신용하(오간호사 남편, 46세정도)가 독방 책임자로 근무당시 배경선 및 김은태, 정동원, 김기태 등 4명을 20여일 동안 고문(하루 종일 무릎 끓고 손들고 있는)을 가했다. 손바닥을 당구채로 때리고, 의식 멀쩡하다(현재는 한일병원). 신용하가 뒷꿈치로 허벅지를 짓이김. 담배사건-독방에 담배를 소지하고 들어옴.

③ 사례 3

장현성(당시 40세)씨가 95년 2월초, 유리창을 깨뜨려서 목을 세번 찔러서 자살 기도(김봉희 목격). 평소에 여기서 간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말하곤 했다. 응급처치도 없이 수건을 원생 시켜서 탑차에 싣고 조치원 지나서 청주 가다가 죽었다. 짜아간 원생(김영조, 김창, 식당에서 일함. 현재도 있다). 왜 굳이 청주로 갔는지 모르겠다.

④ 사례 4

임형석(당시 39세 정도), 93년 초여름, 오후에 모포 옥상에서 털던 중 갑자기 3층 옥상에서 지하실 입구 쪽으로 투신(밑에 콘크리트 바닥). 평소에 비관하다가. 작업을 삶어하고 약을 세계 먹고, 담배는 피워야되는데, 작업을 안 하니까 카드도 안나오니까. 10만원 영치금 왔었는데, 몸이 아파서 작업을 못한다니까, 박종민총무(박종구 동생)이 카드와 담배를 압수했다. 그러다가 며칠후 투신자살.

⑤ 사례 5

곽규환(당시 39세 정도), 93년 2월 독방에서 생활실로 나왔는데, 약을 너무 세게 먹었다. 죽기 전 3일전에 마누라와 이사장이 독방으로 면회했다. 확인하고 갔다. 생활실로 내달라고 마누라가 원했다. 온몸이 새까맣다. 매일 세끼 CP 300미리그램 92년 7월 입소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계속 투약당했다.

⑥ 사례 6

양훈구(당시 18세 정도), 94년초,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환자였다. 당시 작업 중에 간식을 빵이 나왔는데, A동 203호실 생활실에서 배가 고프니 빵을 얻어먹다가 급히 먹는 바람에 그대로 숨이 막혀서 죽음. 시체 처리-개미고개. 보호자도 없다.

- 이외에도 특히 송현원의 경우에는 비관자살과 사망사건에 대한 중언이 꽤나 나오고 있다. 자살 내지 사망사건의 경우 가족이 시신을 인계해 가지 않는 경우에는 개미고개에 매장된다.

- 사람이 죽으면 염을 전문으로 하는 원생(송현원-문영철), (양지마을-이승훈(도장공))이 염을 하며, 얇은 판에 수의도 없이 넣어서 개미고개에 묻는다. 김영화씨의 증언에 의하면 비오는 날 매장하다가 시신의 발이 빠져 나온 경우도 있었고, 구덩이가 좁으면 그대로 시신을 꾸겨서 매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3) 성폭행 관련

- 양지마을측은 성폭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폭행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 직원이 여자 원생을, 원생 간부가 일반 원생을 성폭행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는 추후 공개할 것이다.

- 성폭행을 당하여 임신이 된 경우 산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강제로 고아원으로 보낸 경우도 확인되었다.

8. 강제노역

(1) 양지마을의 경우

1) 작업종류

① 쇼핑백: 작업장-양지마을 F동 1층 환자실, 송현원, 양지요양원, 대전 자강원 등에서도 함.

② 호차: 샷시문 로라, 이사장 처남, 부용산업

③ 볼: 스타 축구공

④ 가방: 전량 수출. 덕일통상. 가장 많은 인원인 110명 가량이 작업에 동원됨. 가장 수입이 많고 인원이 가장 많고 여자 포함. 유일하게 야간작업이 심한 부서.

- 작업반장: 진종식->타 부서장보다 가장 원생(작업자)을 가혹하게 작업 강요. 이사장으로부터 가장 신임이 두터움.

- 사장, 고과장(실제 인물, 이전에 주임이었기 때문에 고주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 부름), 임대리가 있음.

⑤ 자전차: 영원산업. 세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 등 어린이용 자전거 생산, 프레스 작업시 부상이 많이 생김. 권영노 사장은 전 형사출신이라고 하고, 한나라당 청년회장 이라고 함. 윤상무, 공장장(영원산업), 분채실(도장) 담당, 감독이 있음.

⑥ 자동차공구백: 부용산업, 기아자동차 납품(호차와 업주가 동일인임).

⑦ 예비군: 원내 모든 잔일을 처리

⑧ 영농: 가축 및 농사

* 매년 한번씩 작업동의서라는 것을 미리 인쇄된 종이에 성명과 엄지손가락 직인을 강제로 받고 있음. 거부할 수는 없다. 아마 감사에 걸릴 것을 우려해서일 것임.

* 양지마을의 경우는 노동력이 있는 경우만 수용한다. 노동력이 없는 경우 앉아서 쇼핑백을 만든다. 이와 같은 것은 송현원이나 양지요양원에서도 한다.

* 야간작업, 잔업은 별로 없으나, 철야작업 했던 적도 있으며, 하루에 14시간, 16시간 등의 연장작업을 한 적도 많다.

2) 노임

① 한달 3천원에서 8천원 정도의 노임을 받는다. 현금으로 받지 않고, 카드를 이용한다.

② 노임 등급

- 3, 4천원; 쇼핑백 하등급

- 5천원; 쇼핑백 중간

- 6천원; 쇼핑백 최고

- 7천원; 쇼핑백 리더

- 8천원; 일반 부서

* 여자는 6천원이 최고이나, 박영한씨의 경우는 미싱 기술이 뛰어나서 7천원을 받는다.

* 실장은 1만 3천원을 받았다.

* 서무 1만원

* 살림자 2만 5천원~3만원

③ 적립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박영섭씨의 경우 96년 가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1백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2) 송현원의 경우

1) 작업공정

- 쇼핑백은 본관 지하실(보일러실 개조, 93년경), 총 182명(남자가 약 70%). 96년도에 월 80만 ~90만장까지 생산. 최근에는 60만장 정도. 정신없는 사람도 이 작업을 시킨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 시킨다.

- 2층 강당-타공작업, 끈 매달기 작업

- 지하실에서 내려서 마무리단계 비닐 포장 및 박스 포장, 상차 출고.

- 가방일과 병행, 가방 마무리작업-실밥 다듬는 것(시아게) 비닐 포장, 박스 포장 마무리, 출

고, 양지마을 등 여러 곳에서 오는 것으로 암.

- 지하실. 포장 여자 20명, 남자 12명 정도
- 신나통과 휘발유-각종 이물질 제거용. 하루에 20리터 들이 세통 정도 소비.
- 작업강도-바쁠 때는 작업에 억매이다 보니 지쳐 있다.

* 외역-양지마을이나 자강원 등에 나감.

* 가방봉재 7명, 등가구 1명, 영농 1명 등이 송현원에서 상시적으로 파견되어 있었다.

* 노가다 일이 있을 때는 수시로 지원나가게 됨.(양지마을, 자강원, 원명학교, 신탄진 한일병원, 대전 노인 치매병원 등)

* 작업장에 먼지 많다. 먼지 제거작업 거의 안 한다. 환풍기 하나

* 작업동의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한다.

2) 노임

- 카드나오기 전에는 하루 담배 10개비씩 줌(솔), 전선 껌데기 끼는 사람은 8개비

- 카드가 92년 11월경부터 시행되었는데, 작업 안 나가면 안 나옴.

- 월 지급액 A급-4천원, B급-3천원, 여자는 2천원도 있었다.

- 현재는 6천원-1만1천원(일반원생), 실장은 1만3천원, 감독은 3만원씩 받는다.

- 적금 확인은 97년도 2월초 복사한 서류에 지장을 찍는 것으로 확인한 적이 있다. 통장은 보지 못했다. 정동원씨의 경우 7년간 일한 적금이 34만원이었다.

9. 의료문제

- 양지마을의 경우 투약여부를 오간호사가 결정한다. 그가 간호사라고 해도 처방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불법이다. 또, 약의 투약을 정벌의 한 형태로 사용한다. CP를 강제로 먹이게 되면 눈동자가 풀리고, 졸음이 오며, 힘이 빠진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송현원의 경우도 촉탁의가 한달에 한번 수회하는 정도이며, 실제 약을 짓고, 분배하는 것은 간호사들도 아닌 간부원생들이 한다. 더욱이 정신질환자가 이를 맡는 경우도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심지어 투약 여부, 약의 양을 결정하는 데는 전문의나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력의 판단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원장 등 직원들의 판단이 우선된다. 이는 명백히 위법이다.

- 의료보험료를 착복하기 위한 여러 의혹이 있다.

* 의료문제는 정확한 확인과정에 있으며, 확인과정을 거쳐서 불법의료행위들을 밝혀야 한다.

◇ 염훈(98년 7월 27일 퇴소자)씨의 증언: 양지마을의 간호사가 오명영이라고 보통 오간호사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오간호사는 정식 간호사도 아님에도 자기 맘대로 처방을 하고, CP 투약을 심하게 해서 사람들 여럿 못쓰게 만든 장본입니다. 본인은 양지마을 수용 기간 중 혈압 약을 계속 먹었는데, 워낙 약을 독하게 지어 주었습니다. 오간호사는 예를 들자면 윤창수와 같은 경우는 등치가 크고(탁자) 작업장에서 조장한테 불봉제 나가는 사람인데 심하게 다루니까 쪽가위로 조금 덤볐다는 이유로 오간호사가 CP를 많은 양을 투약시켰습니다. 입소 직후부터 봤는데 나올 때까지 점점 양을 늘여서 투약하여 윤창수는 손이 덜덜 떨리고 힘을 전혀 못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 입소 때에는 손이 떨리는 증세는 없었습니다. 신태영은 진주사람인데, 다리 장단지에 장미문신이 요란하게 생겨져 있고, 등치가 큽니다. 그 사람도 CP를 많이 먹여서 계속 손을 땡깁니다. 이들 외에도 사람들이 손을 심하게 떠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두 CP를 먹인 것입니다. 약을 타먹으려면 보고전을 내야 하는데, 자기한테 고분고분하지 않거나 맘에 안 들면 죽는다 해도 병원에도 안보내 줍니다. 정 안되어 이서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야 병원에 보냅니다. 병원에 갔다오면 증세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이미 시기가 늦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전차에 있던 이정현은 다리가 몹시 아파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다리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부터 배까지를 절개, 대수술했습니다. 그래서 몇달 있다 왔는데, 얼굴이 가죽만 남았습니다. 같이 퇴소한 박상식이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아무리 죽는다고해도 매일 우는 소리한다고 하면서 병원을 안보내줍니다. 자기 마음에 안드는 사람한테는 감기약 하나 주지 않는 피도 눈물도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한일병원 4층에 입원해 있으면서 목격한 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일 병원 입원 후 병원 실태를 본다면, 오히려 양지마을 보다도 더한 지옥입니다. 쇠창살이 되어 있고, 양지마을 몇번 드나든 사람인 최동연을 실장으로 앉혀놓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산소호흡기를 제거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옆 침대 원기석(50대)이가 죽을 사람으로 보였는데, 몸이 하도 쇠약해서 정확히 며칠인지 모르지만, 오후 4시쯤 산소호흡기를 최동연이가 맘대로 제거했습니다. 밥을 4시30분 쯤 먹는데, 앓아서 죽어갔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간호사들이 오고, 의사가 오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못 살아났습니다. 병원 직원 유계장, 염기사라는 사람하고 밤이면 최동연에게 술을 사다줍니다. 운동기구 역기까지 갖다주고, 수시로 커피, 담배, 음료수 과자 등을 제공해주고, 본인 생각에는 이 두사람의 사주를 받은 것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사람을 실장으로 바로 앉힌 사람이 노재중입니다. 병원에 있을 때 죽어나간 사람이 손명순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배에 복수가 찬 사람인데 최동연이가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침대에 던졌습니다. 최동연은 걸을 수 있으면서도 안 걷는다고 하면서 최동연이가 뺏고, 그 다음날 저녁밥 먹을 때쯤 죽었습니다. 신경장원이라는데서 온 성명불상의 남자는 산소호흡기를 대놓고 응급처치를 하더니 들어온 지 한시간만에 죽었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밤 10시경에 최동연이보러 직원이 빨리 장갑 끼고 나오라고 하여 죄가 갔다와서 하는 말이 오늘 또 한 마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입원해 있는 사람 중에 사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최동연에게 목을 수차례 캐캐 숨넘어가는 소리를 지를 때까지 조르고, 목에 시커먼 손자국이 있고, 시시각각으로 무수히 구타당한 송광진, 얼굴과 가슴에 새파랗게 멍이 들고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76세 황의탁(송현원 소속), 팔이 오그라진다고 하면서 침대에 발과 팔을 묶어놓고 가슴등을 무수히 구타당한 40세 가량의 주중평, 무수히 많이 맞아서 가장 먼저 죽기 쉬운 40세 가량의 전철증, 안 펴지는 다리를 펴준다고 하면서 침대 위에 놓고 허벅지에 올라서서 막 죽는다고 고함을 질러도 막밟아대서 양쪽 허벅지가 새파랗게 멍이 들었고 가슴 목 부위에 멍이 든 자국이 많고 머리에 터진 자국도 있는 75세 가량된 김광배, 대령 예편했고 딸이 위탁했다고 하는데, 안면을 구타하고, 네가 대령이라고하면서 구타를 당한 탈수증, 일사병 환자로 약 70세 되는 정의식이라는 남자 등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양지마을 소속입니다. 최동연이 구타하는 시간이 주로 오후시간과 저녁에 합니다. 간호사들 눈을 피해서 하는데, 간호사들나 의사도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요일(7월 26일) 저녁, 술이 만취되어 가지고 6층에 올라가서 50세 정도되는 이덕수(자강원)라는 사람을 얼굴을 때렸습니다. 코피가 터졌는데, 최동연이가 사과하려 다니고, 저녁에 가서 술도 갖다 주고 했습니다. 이사람은 본인이 퇴원할 때 같이 나왔습니다. 최근 가족들이 와서 데려오면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나가면 다 죽여버린다고 평소에 말하고, 가족들과 제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모조리 처치해 버리고, 일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 이병운씨의 경우: 직접 겪은 교통사고는 93년 가을(9,10월)경, 양지마을에서 대전 대화동 소재의 한일병원 1층부터 5층까지 개축공사를 하고 돌아오던 중 신탄진 전매청 앞에서 조치원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1명이 사망, 6명 중상을 입는 큰 사고였습니다. 본인도 중상을 입었는데, 양쪽 다리가 절이면서 마비증세가 왔습니다. 대전의 성명불상의 병원에 당일 입원하였다가 당일로 한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일주일간 입원치료하였습니다. 그후 다시 양지마을로 갔습니다. 양지마을로 들어간 다음에 합의금 조로 10만원씩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합의금 20만원을 받고 끝났습니다.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다리에 마비증세가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송성근이라고 살립하던 원생 간부였는데, 그 이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당시 송성근과 살립하던 여자는 양지마을에서 집으로 보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김제한씨의 경우: 본인은 사회에서 원쪽 다리 대퇴부를 다쳐서 일을 심하게 하면 후유증으로 통증이 옵니다. 이런 다리 후유증 때문에 97년 5월 한일병원 대화동 한달간 입원했습니다. 한달 동안에 원생 4-5명이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당시 같이 입원하였던 실장 중의 한 명이었던 김대성씨가 하루 1년 동안 6-70명 죽어나갔다고 했습니다.

원생들이 입원하는 곳은 대전 대화동 한일병원 6층입니다. 거기에 감금시켜놓고 치료를 합니다. 6층에는 천성원 직원 밖에 일반인이 접근을 못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병동 전체에 철대문이 있고, 방마다 출입문이 철문이고 바깥에서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고, 창문 안쪽으로 철창이 여닫이식으로 있고, 이 철창을 열쇠로 채워놓았습니다. 지난해 6층에 40여평 되는 공간에 29명이 있었습니다. 침

대, 텔레비전 한 대가 있었고, 칸막이는 결핵환자 격리를 위해 하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다시 다리 후유증으로 병원 가서 한달 가량 있었는데, 한달에 4명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서 보니까 원생용 병실을 4층에 또 하나 만들었다. 6층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환자들 보는 원생을 하나씩 배치해놓았고, 일보는 원생들에게 한달에 1만원씩 주었습니다. 올해 2월에 입원했을 때 바로 내 옆 침대에 있던 사람이 죽었는데(이름은 모름), 항문에서 하혈을 심하게 하다가 사흘만에 죽었습니다. 과장이라는 사람이나 간호사들도 “수술만 하면 괜찮다.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올 2월 한달간 입원했을 때도 4명이 죽어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인은 진통제 먹고, 주사 놓고, 쉬고, 물리치료 하는 정도의 치료를 했습니다.

10. 비리

- 정부지원금의 착복, 횡령 등이 곳곳에서 의심이 간다. 이런 부분을 자료로 검토중이며, 퇴소사 중에서 이에 대한 상당한 실마리를 갖고 있는 이도 있다.

- 노동력의 착취에 의한 임금 착복은 그동안 양지마을과 송현원을 비롯한 천성원 전 기관 안에서 진행된 작업을 따져보면 금방 드러나게 될 것이다.

- 이런 비리 관계는 노재중 이사장과 각급 공무원들의 유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감사도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퇴소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 유경수씨의 증언: 양지요양원 건물(7억평가, 인건비는 5억정도)라고 하나, 실제로는 인건비를 모두 원생들에게 시켰고, 인건비를 착복하였다. 노재중 소유 땅이 대평리에 한3만평정도 있고, 이곳에 작업을 나가게 하여 알게 됨(10여명이 벌목등 작업). 원생이 사망하면 적립되었던 돈은 가족에게 반납되지 않음. 1년간 원생들 인건비는 10억이 떨어지고 이를 착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건축비, 인건비는 정상노임으로 청구하고, 실제로는 원생들을 시켜 일하게 함으로써 노가다(일용노동)비용을 1년간 10억원정도 착복함--16년간에 걸친 착복을 생각하면, 착복금액은 어마어마하다

*선거때가 되어도 선거는 꿈도 못 꿈--수용자들도 모두 부재자투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함, 다만 전체원생중 40명정도는 투표에 참가함(주로 인근 마을에서 위탁시킨 사람들이나, 처음에는 원생이었다가 충성후 주소지를 양지원으로 옮긴 사람)--박종구, 노재중은 노골적으로 누구에게 투표하라고 요구함

*약값비리-약값, 의료비, 진료비 중 거의 반은 착복함, 약사자격도 없는 송현원의 간호보조들이 함부로 약을 제조하여 줌. 필요한 약의 돈을 타낸 후, 실제로는 품질이 더 나쁜 약만 사고, 나머지는 착복함. 송현원, 양지원 등 1,000명분으로 1달에 1억정도 약값으로 잡히는 것으로 안다.(1인당 약값, 의료비, 진료비 평균으로 10만원정도 계산잡음)

*원생이 죽으면, 군에서 장례비 30-40만원정도 나오고, 단속되어 수용될 때 소지증인 금품은 보관 명목으로 가지고 있다가 착복, 노임통장명목의 돈도 사망하면, 착복한다(상속인에게 연락할 때, 사

망자의 부랑아취급행패위주로 알려 줘 아래 상속인들이 찾아올 생각이 들지 않게 함으로써 연락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착복한다)

*1달에 식비,부식비,피복비등 16만8천원,약20만원정도 나오는데, 1,000명분중 거의 절반을 착복한다. 음식을 보면, 거의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닐 정도로 엉망이다,이는 부식비 착복의 반증이다.

*영원산업:사장 권 모사장-현재 한나라당 연기군 지구당 당원 겸 한나라당 청소년 어떤 분과 위원장. 양지원내 아동용 쟁쟁카,세발자전거 발주처 사장인데, 양지원과의 거래를 통하여 충분히 양지마을의 비리를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원생들의 노동착취로 인한 상품을 생산케하고 거래하였는데, 매달 500만원정도를 양지원 사무실에 제공하는 대가로 염가의 노동력으로 물품을 생산다. 영원산업에서 일하다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불구자가 된 원생도 많다. 보상조치도 없었다.

◇ 윤석만씨의 증언: 건축공사비 착복이 많고, 공사시 철근이 매우 엉성하게 부실 공사되는 것을 아는 데, 이런 식으로 공사비 착복이 많은 것 같다.

◇ 김인수씨의 증언: 불공장이나 호차공장에서 작업을 하며 할당받은 양에 대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씩 양지원에서 받아 착복하였는지는 모름.

◇ 이종학씨의 증언: 연기군청에 근무하는 이주사라는 담당공무원은 양지마을의 실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비호하기에만 급급할 뿐 아니라 양지마을의 원생들에게 욕설까지 하며 일하라고 강요하는데 앞장서서 원생들의 원한을 사고 있는데 본인이 1994.12. 양지원으로 입소할 때 의무실에서 “너는 이제는 못 나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위 이주사는 양지마을 이사장 노재중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으로 검은 유착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영화씨의 증언: 공사를 하게되면 ‘타일, 돌, 설비’ 외에 나머지는 원생이 다 일을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이사장에게 공사비 670,000,000원이 나오는데 남는 돈은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니 “초등학교 다니는 애 3명 대학가는 기금이다 예금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사시에는 노이사장이 공사업자에게 원생에게 연락을 취해주거나, 담배나 돈 주면 공사비 받아갈 생각 하지 말아라고 하여 원생이 공사업자들을 통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자재 공급 업체에게는 도장 찍은 영수증 달라고 하여 공사비를 과장하고, 양지원 요양원에는 지하실이 있으며 비밀 서류 창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공무원이 준공검사 하러 오는 것을 못보았으며 어떻게 준공이 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염훈씨의 증언: 감사나올 때는 자강원 소속을 양지마을에서 일을 시키다가 감사 나오는 것을 먼저 알고 빨리 빼돌리는데, 자강원에 감사나오면 양지마을로 빼돌리고, 양지마을에 왔던 사람들은

자강원으로 데려가는 식으로 합니다. 그것도 안되면 구석진 식당 지하 창고 같은데 숨겨서 그 상황을 넘깁니다. 자강원, 송현원, 양지마을 소속 사람들을 수시로 옮겨가면서 작업을 시킵니다.

◇ 이병운씨의 증언: 외역반은 15-40명 정도가 팀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가다 기술들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사회 기술자를 썼습니다. 노동한 별도의 임금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 김제한씨의 증언: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양지마을의 뿌리를 확 뽑기 위해서는 노재중과 양지마을 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청 직원들도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군청 직원이 노재중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군청 직원은 오면 반말 지껄이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고도 “네 애비 뭐하냐”고 그립니다. 군청 직원이 와서 퇴소 심사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박원장을 처음 만날 때 군청 직원이 같이 들어와 경위를 묻고, 주소를 묻고는 되었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외에 만나서 퇴소심사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사람들이 40명 가량 나갔는데, 면담을 3번 신청을 했는데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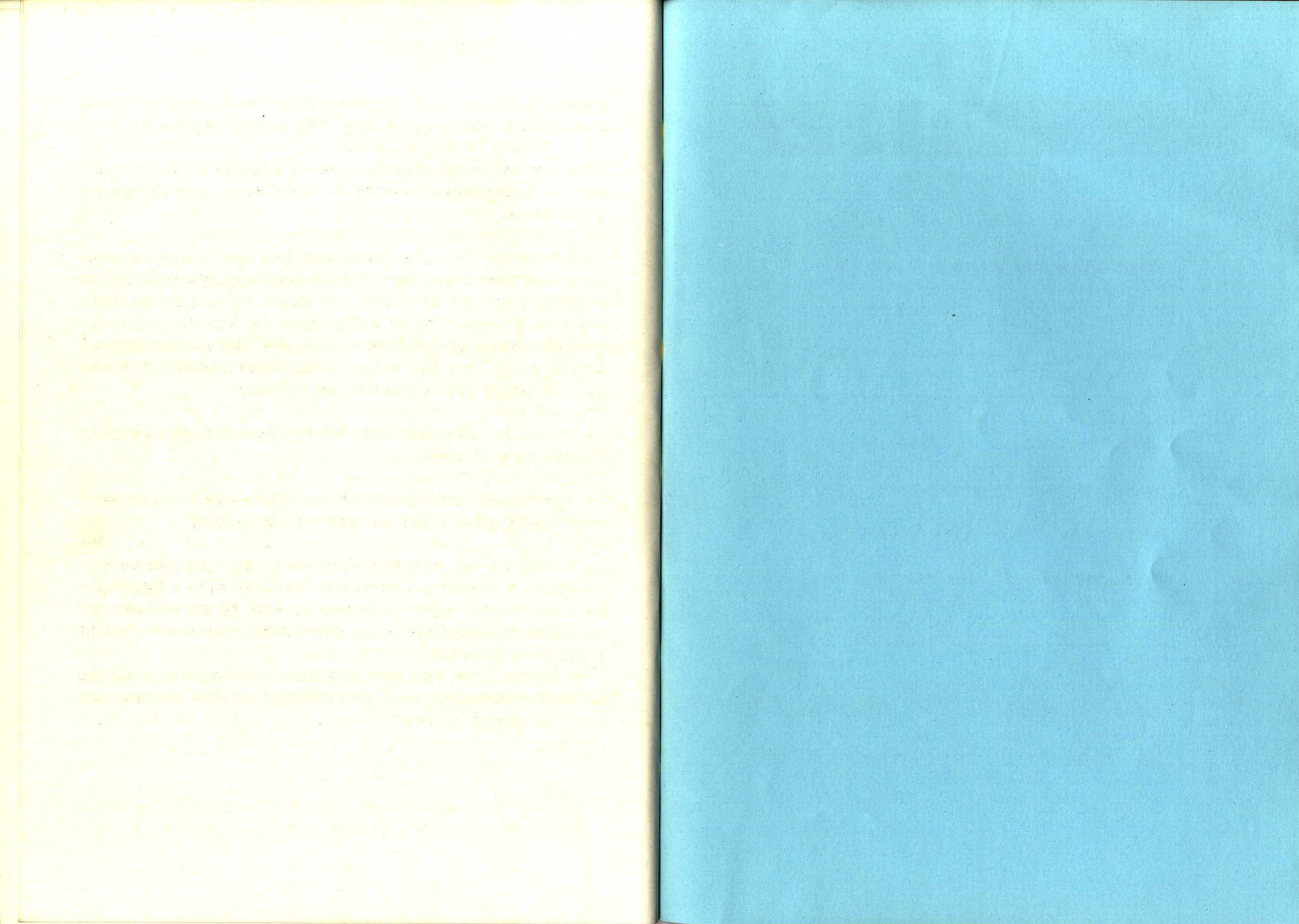
◇ 김용출씨의 증언: 소문에(원생들) 이사장이 논산 구기지 신생원 뒷산을 차명 구입했다고 하고 양지원생들이 그곳에 가서 일한 적이 있다.

◇ 정선우(정태호)씨의 증언: 소문으로 군, 도청 직원이 지원금을 횡령하고 나누었다고 하는 소문이 양지마을 내에 돌았습니다. 물증을 우리 입장에선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 김도수씨의 증언: 나올 때까지 계속 노가다 일을 했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일명 개잡부로 일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노가다 일을 하면서 신축한 건물은 폐수처리장, 부원장과 오간호사가 기거하는 관사(겉에는 슬레이트 지붕인데 안에는 완전 호화판), F동, 현재 신축공사중인 양지마을 담 안쪽의 건물, 송현원 신축중인 건물들을 작업했다. 신축중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개축이라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 폐기물(가방 전선줄, 생활실 쓰레기 등)을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고, 물을 끓인다는 평계로 전선줄을 약 7~8톤 태워서 흙에다 범벅을 해서 반출을 했다. 반출한 장소는 모른다. 그것은 항상적으로 하는 것이다.

-끝-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 화	팩 스	통신ID
사회자	이정호	국립사회복지연수원 교수	02) 463-8387	466-2096	
주 제 발 표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652) 270-2963	270-2968	천리안 bjm11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652) 220-2318	224-9920	천리안 pjyooncy
	이찬진	민변 변호사	02) 525-3660	525-3663	
지 정 토 론 자	김정렬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소장	02) 521-5364	584-7701	천리안 cowalk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02) 741-5363	741-5364	천리안 rights
	이덕우	민변 변호사	02) 596-4101	596-4104	천리안 군포사랑
	임인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	02) 503-7562	504-1392	천리안 bokji7
	조홍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2) 880-6459	883-8885	천리안 cho6459
	최재명	사랑밭재활원 원장	0339) 376-5690	376-5691	천리안 bslee2
	김영화	양지마을 출소자			
국회인권포럼			02) 784-5365	788-3104	천리안 cmkwon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 786-0190	786-0191	천) · 하) kasw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02) 723-5300	723-5055	천) · 하) PSPD